2000-58

http://www.maf.go.kr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총 5권중 제5권

2000,11



국회 도서관 — 00853992



이 엠븀렘은 한국농업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 내는 상징체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미션의 기본요소이다.

가는도그어나, 생석의 정상을 통하여 무한히 발전할 한국능업의 가능성과 본환경능업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장석원은 인터넷 E-mail주으의 명칭상을 활항하여 신자식 · 경도화된 동업과 서로 조화되고 상성(배보) 하면서 능명인과 소비자가 함께 신제제로 받아가는 한국능명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참 녹·통·국에 역동을 표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가세화되었으며 청석과 국석의 변화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였다.



한국농업의 마스코트인 '새농이'는 '새로운 농업'이 라는 의미로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열불 템의 기본요소인 푸른새학을 의민화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농업을 나타내는 어린이 의 이미지로 앞으로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기중등록 2001. 2. 0 5 호텔 집절성도 모두

일 러 두 기

50 정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보시다.첫)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의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 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시행지침의 2001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o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ㅇ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ㅇ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r 미시미의 취호	
I. 경영기반 확충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58. 영림계획(자율)	196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7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97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98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199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2017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2034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38
	-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Ⅲ. 인력육성	2083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83 2085
Ⅲ. 인력육성	2083 2085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2083 2085 2090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2083 2085 2090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Ⅳ. 산림복지 기능증진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Ⅳ. 산림복지 기능증진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Ⅳ. 산림복지 기능증진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83 2085 2090 2101 2103
Ⅲ. 인력육성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Ⅳ. 산림복지 기능증진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68. 산촌종합개발(공공)	
Ⅲ. 인력육성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주요변경사항

Ι.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경	
-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 14
	제3장 공공사업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 26
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4. 해설	.38
Ш.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50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1	109
٧.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29
	·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31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 생	산기반 확충239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241
2.	토양개량사업(차율)29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317
4.	밭기반정비사업(공공)
5.	경지정리사업(공공)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7.	배수개선사업(공공)415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438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9.	③ 방조제개보수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장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515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공)570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2.	지역특화사업(공공)605
٠	
	·업기계화631
13.	농기계구입지원(자율)633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63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637
Ⅲ. 생	산 및 유통개선639
16.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지원(자율)641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665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Ι.	생	산기반 확충66	9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67	1
Π.	사	육기반확충68	1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기울)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20	③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_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4	41.	작산 세월와사립(중중)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1
4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공공)	5
2	23.	가축개량사업(공공)	9
ΠŢ	위	예 생산 및 유통개선88	7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3) 원)	
	1.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3월)93	5
	-	① 산지농협유통활성화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20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④ 인삼생산장려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2
4	20.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ر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	27.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시설지원(공공)101	0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	28	응선물ㅠ등시골로된 · 변·당선물물이득선사리시된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105	2
•	40.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_
÷.		③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④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109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8
	31.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111 농산물 수출진홍사업(공공)111	o a
•	02.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홍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J
;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116	5
17.7	يخ	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118	<u></u>
		*선물 중합처리장 건설사업(공공)118	
		국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공공)110	
	00.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종별 자율사업	
,	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3
	27	① 축산물 안정성강화 ② 가축공제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129	5
•	۱۱.	① 축산물검사 ② 가축방역	J
,	38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

제4권	농촌개발	
1.	생산 및 유통개선	1331
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1333
	①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0.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1386
. 4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1 477
4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지율)	1477
Π	기술개발	1505
	-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0.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1535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4-H회원과제활동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ш. ч	인력육성	1575
45	5.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577
46	5.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21
47	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4
IV.	소득보전	1675
48	3.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677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③ 논농업 직접지불	
).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740
V. :	소득원 개발	1753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52	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803
53	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820
54	1.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834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I.	생활환경개선	1845
55	5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공공)	18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 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	
56	6.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926

Ⅰ.경영기반확충

여 배

57 산림경영장비지원 (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용하, 임업사무관 제경영)입니다.

I. 임업기계장비구입지원

1. 목 적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들에게 임업용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인력의존에서 기계화로 전환하여 생산효율 증대
- o 민간부문의 임업기계화 촉진
- o 임업기계·장비 및 기술보급 전초 기지화

3. 근거법령

- o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 ,	사업량	141명 (245대)	10명 (10대)	21명 (21대)	38명 (38대)	440명 (440명)
사	계	8,721	737	663 .	714	31,400
\ ^r	보조		-	_	-	_
업	융자	6,103	516	464	500	22,000
비	지방비		-	_		_
	자부담	2,618	221	199	214	9,400

5. 2001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0 배 경

- 농산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표적인 3D업종 으로 산림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 산림작업은 부득이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산림경영자의 영세성 등으로 임업기계 구입에는 한계

ㅇ 지원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산림경영장비

- 지원단가 : 50백만원이내

나.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내용별	용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ની મી.પો	키 님 니	
		합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38명	714	500	-	500	· _	214	
임 업 기계화	21명	714	500	-	500	-	214	

※ 융자조건 : 연리 4%, 3년거치후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 · 군 · 구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융 자 지 원 : 시·군산림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481-4206)

o 시·도: 산림관련부서

o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416-9421)

○ 시·군산림조합 : 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2001년 산림경영장비 지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

라.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임업기계 구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자가 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승인 요청
 - 사업주관기관인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산림조합에 통보
-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로부터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산림조합은 신청자에게 대출 신청토록 통보
 - 산림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 ㅇ 추진일정

- 자금 신청 : 1월 ~ 12월

- 자금 대출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융자금 회수
- ㅇ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 등을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 ㅇ 사후관리절차
 -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장비구입 활용여부 및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점검
 -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여부 점검

6. 2002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산림관련부서)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ㅇ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
- (2) 우선순위
 - ① 독림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소재산주

다. 신청절차

o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산주 신청→심사(시장, 군수)→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산림조합장에게 통보

 선정권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림계획, 융자금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ㅇ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ㅇ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유의사항)

- ㅇ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융자
- ㅇ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융자지원의 연계추진
- ㅇ 채권보전 : 융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 의함.

Ⅱ. 임업기계장비센터설치

1. 목 적

영세한 산주에게 싼 가격으로 임업기계 장비를 대여·수리해줌으로써 산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인력의존에서 기계화로 전환하여 생산효율 증대
- ㅇ 민간부문의 임업기계화 촉진
 - o 임업기계·장비 및 기술보급 전초 기지화

3. 근거법령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	사업량	. -		-	1개소	6개소
	계	-	_		435	2,610
사	보 조	-	-	_	435	2,610
업.	융 자					
月	지방비					
	자부담			·		·

5. 2001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일시적 사용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업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세한 산주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장비를 대여· 수리해줄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산주의 경제부담 경감

ㅇ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보조 100%

-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

나.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u> </u>	\	업 1	3]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	:액(농특호]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자	7184	사구급
계	1개소	435	435	435	_	_	_
기계화 장비센터	1개소	435	435	435			_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ㅇ 대상자 선정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o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481-4206)

o 산림조합중앙회 : 개발부(02-416-9418)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 사업계획(부지위치, 면적, 구입기계·장비 등)과 시설공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청에 변경 숭인후 추진
-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장이 숭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하게사용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비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정산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o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조합중앙회장
 - ㅇ 사후관리절차
 -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 활용 여부 및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점검

6. 2002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1, 11,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 나.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중앙회
- 다. 신청절차

산림조합중앙회 <u>산</u>림 청

58 영 림 계 획 (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조병철, 임업사무관 조은수)입니다.

1. 목 적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영림계획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영림계획 작성 · 운영을 통한 합리적 산림경영 유도
- 산림경영의 의지가 있는 자나 경영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경쟁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추진 체계화

3. 근거법령

- o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 ㅇ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 ㅇ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 등)
 - ㅇ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Ŧ	7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1	사업량 천ha)	2,142	100	100	100	600
사	계	11,134	810	810	810	4,860
' '	보 조	4,760	405	405	405	2,430
업	융 자	-		. –	, -	-
	지방비	3,706	405	405	405	2,430
日	자부담	2,668	<u></u>	_	_	_

대한민국국회도서관장서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작성기간 : 10년 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 작성

ㅇ 작성내용

- 조

림 : 조림수종, 면적, 수량

- 육 립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등

- 벌채(수목굴취) : 벌채수종, 면적, 수량

- 임도(작업로 포함) : 임도의 노선, 거리, 시설년도 등

- 기 타 : 소득사업

ㅇ 지원대상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단가 : 8,100원/ha(국고50%, 지방비 50%)

ㅇ 지원조건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	나 	법 법]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7 7 7 1	사구님
계	100천ha	810	405	405		405	
영림계획작성	100천ha	810	405	405		405	_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2001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한 자

다.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	시 • 군
작성대상임지파악		· 영림계획작성 및 인기신청		영림계획인가 및 작성
영림계획작성권장		· 경비보조신청		경비 지급

라.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림가 · 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체가입 산림
 - ② 임업진홍촉진지역
 - ③ 생산임지
 - ④ 기타 산림
- ㅇ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임지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권장(시・군)
 - 영림계획 작성(영림기술자, 독림가 · 임업후계자는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가능)
 - 영림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o 시 · 도 : 산림관련부서

o 시·군, 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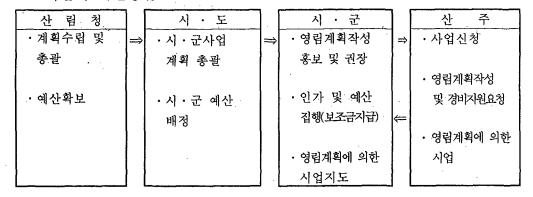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2001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자

라.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
 - 영림계획 작성대상 산림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 영림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시 작성경비 보조 안내
 - 영림계획 인가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ㅇ 사업비 지원방법



마. 영립계획 작성

- ㅇ 산림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배치된 영림기술자
- 독림가·임업후계자(소유산림에 한함)
- ′ ㅇ 영림기술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 인가전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영림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영림계획 인가와 동시에 8.100원/ha(국고50%, 지방비50%) 작성경비 지원
- ㅇ 영림계획 인가지역에서는 영림계획대로 산림시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 ㅇ 영림계획대로 시업하는 자에게는 국고보조 사업일 경우 우선 지원
- ㅇ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림계획 인가 취소

나. 보고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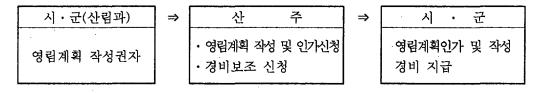
- 0 연 보
 - 영림계획 작성현황 및 실행상황 보고(총49-31)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총공통-9)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2년도 영림계획 작성을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림가 · 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체 가입 산림
 - ② 임업진홍촉진지역
 - ③ 생산임지
 - ④ 기타 산림

ㅇ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권자(시·군)
-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조병철, 임업사무관 조은수)입니다.

1. 목 적

 영세 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의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소득을 증대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협업체의 경영 내실화 추진
- ㅇ 협업체 소득사업을 중점추진하여 협업체회원의 소득증대 도모
- ㅇ 협업체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임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3. 근거법령

임업진홍촉진법 제7조(경영구조개선),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업량	조 직 (운 영)		247개	- (2477भे)	- (247개)	- (247개)	- (247개)
, ,,	공동소득지원		279기	22개	22개	22개	66 गो
	계		18,211	2,147	2,216	2,216	6,648
	보	조	10,022	1,324	1,353	1,353	4,059
사업비	윰	자	-		-	-	-
	지	방 비	1,252	259	288	288	864
	자	부 담	6,937	564	575	575	1,725

※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사유림 총면적은 4,517천ha, 산주수는 약 2,091천명으로 산주 1인당 평균소유면적은 2.2ha에 불과하고, 10ha 미만 산주가 96%를 차지하여, 개별산주의 독자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협업경영을 통하여 임지를 규모화함으로써 소규모 임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유도

(2) 자금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 대상자	지 원 단 가	지원 조건
• 경영지도사업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국고 80% 국고 100%
• 산림사업	협업체 회원	조림 : 80,000원/ha(경제수기준) 육림 : 41,000원/ha(간벌기준)	자부담의 30%
• 공동소득원사업	협업체 회원	표고재배 시설 : 28,980원/m² 저온저장고 : 120,000원/m²	국 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산림사업은 산주 부담비의 30%에 대해서 추가로 국고지원하는 것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7] HLul	·키 H rl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2,216	1,353	1,353	_	288	575	
- 일반회계		1,256	1,065	1,065			191	
• 인건비지원	85명	956	765	765	_	-	191	
• 협업체운영비	247개소	206	206	206	_	_		
• 산림사업	1,575ha	94	94	- 94				
- 농특회계		960	288	288	. –	288	384	
• 공동소득원사업	23협업체	960	288	288	_	288	38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o 시·도: 산림관련 부서,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o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경영지도사업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ㅇ 산림사업 및 공동소득원 사업 : 협업체 회원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산림조합 및 협업체회원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작성하여 농특회계(협업체 공동소득원조성)는 시장 · 군수,

일반회계는 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승인권자 : 산림청장
- ㅇ 사업비집행방법
 - 협업체 단기소득사업은 시·군에서 집행
- 협업경영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행
- ㅇ 추진일정

보조금 신청 : 1월~12월보조금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협업체가 임업경영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이 되도록 산림사업및 소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자도
- 산림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업경영지도원의 교육및 지도・감독에 철저
- o 협업지도원은 협업체 가입산주의 애로사항을 현장중심으로 해결하고 협업체별 특색화된 협업사업을 발굴·조성함으로써 협업경영의 내실화 추진

나. 보고 · 기타

- ㅇ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1.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 o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o.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ㅇ 일반회계 : 산림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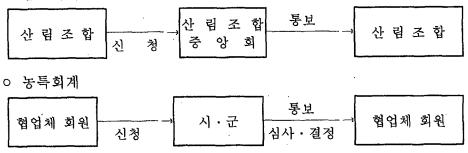
ㅇ 농특회계 : 시·군

나. 신청자격

- ㅇ 협업체 회원
- ㅇ 협업체가 조직된 산림조합

다. 신청절차

ㅇ 일반회계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4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권역의 협업체
 - 임업후계자, 임업관련 영농법인이 활성화된 협업체
 - 협업체 운영지도가 용이한 지역

ㅇ 신청절차

- 시장·군수는 협업체의 산림사업 및 공동소득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협업경영지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공공)

I. 임도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과장 허경대, 임업서기관 이철수) 입니다.

1. 목 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중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구현을 위하여 품질 우선의 임도설치
- o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설치, 임업진흥 권역에 집중설치하여 활용도 제고
- ㅇ 기존임도와 연계하여 간선임도 위주로 설치

3. 근거법령

- ㅇ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 ㅇ 산림법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ㅇ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km,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			
-	신 설	7,362	985	935	861	1,388	-3,952
-	구조개량	-	-	100	150	250	600
-	보 수	2,336	400	500	500	500	1,000
사	계	381,570	63,502	63,346	65,485	91,021	259,043
	보 조	169,289	28,924	28,532	30,229	39,604	110,292
업	융 자	41,188	5,654	6,282	5,027	11,814	38,462
	지방비	149,952	23,139	22,826	24,183	31,684	88,240
비	자부담	21,141	5,785	5,706	6,046	7,919	22,049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개 요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안에 임도(산길)를 설치

ㅇ 지워대상

- 국고보조임도 : 시·군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노선이 통과하는 산림 - 융 자 임 도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ㅇ 지원규모

- 국고보조임도 : 임도설치계획에 의거 현지에 알맞게 피해방지 · 경관유지

토록 설계하고 설계금액을 전액지원

- 융 자 임 도 :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이내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임도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 10%는 영세산주 지원차원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 융자임도 : 국고융자 10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임도의 노선선정기준・설계 기준・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노선선정・설계・계획된 경우에 한하여 융자 가능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km, 백만원)

		,		사 업	用		,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예 산	액 (농특	회계)	
		합 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861	65,485	65,485	30,229	5,027	24,183	6,046
	(650)				,		İ
ㅇ신 설	861	59,735	59,735	27,354	5,027	21,883	5,471
- 보 조	786	54,708	54,708	27,354		21,883	5,471
- 융 자	75	5,027	5,027	_	5,027		
ㅇ보 수	500	2,000	2,000	1,000	_	800	200
ㅇ구조개량	150	3,750	3,750	1,875	-	1,500	375

^{* ()}내는 구조개량(150km) · 보수(500km) 사업량임.

<추진체계>

가. 국고보조임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담당부서

o 산림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042-481-4181-3)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3) 대상지 선정

- o 선정기준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ㅇ 선정방법

-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2의2 규정에 알맞게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
-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계획 담당 부서와 혐의하여 개설 예정노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4) 사업시행

- o 사업시행 전년도에 노선선정 및 기본조사설계 완료
- 실시설계도 가급적 전년도에 완료(다만, 산주동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당년도 실시설계)
- 임도설계시 옆도랑 터파기는 전량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설계하되, 토양・지질상 인력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력시공 공정을 반영하고, 실제로 인력시공한 경우에만 공사비를 인정하여 정산
- 견실한 임도설치를 위하여 장기간의 산림토목 시공경력과 전문인력・ 기술・장비를 갖춘 자가 우선 시공토록 할 수 있음.
- o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
 - · 국고 소요예산 확보 및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시·군비 확보, 사업설계 및 발주, 실행 지도 감독

나. 융자임도

- (1) 사업주관기관 : 시 · 군산림조합
- (2) 사업담당부서
 - ㅇ 산 림 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042-481-4181-3)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부(02-416-9421-2)
 - o 시·군산림조합
- (3) 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자부담(융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융자취급기관(산림조합)의 여신관계 제 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이 가능한 자
 - ㅇ 우선순위
 - 시·군산림조합의 융자신청 순위에 따라 선정
 - ㅇ 선정절차
 - 산림조합에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후 선정

(4) 사업시행

- ㅇ 사업공정계획
 - 1 ~ 3월 : 융자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
 - 3 ~ 12월 : 임도노선 선정 및 실시설계, 공사실행·준공
 - ※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임도의 노선선정기준·설계기준·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노선선정·설계·계획된 경우에 한하여 융자 가능

- ㅇ 사업계획 변경
 - 임도공사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실행
- ㅇ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융자지침시달 및 예산확보후 사업계획의 종합 시달
 -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을 도별로 조정
 - 시·군산림조합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 ※ 융자임도시설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신고 또는 영림계획시업신고 등 행정처리는 시·군에서 조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국고보조 임도는 시장·군수가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가 유지·관리
- 융자임도는 임도를 설치한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유지·관리 (단, 융자금의 관리는 산림조합)

나. 보고·기타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Ⅱ. 사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과장 허경태, 임업사무관 김동권) 입니다.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산정 → 산복 → 댐 → 야계)
- ㅇ 적지적공법에 의한 합리적 설계와 견실한 시공
 - ㅇ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 시공

3. 근거법령

- ㅇ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중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국가에서 선정 실행
- ㅇ 사방사업법 제2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산 지 사 방(ha)	1,589	100	100	47	220
	예 방 사 방(ha)	247	- 20	20	20	150
사	야 계 사 방(km)	738	53	51	55	670
	사 방 댐(개소)	462	62	67	110	640
업	사방댐준설(개소)	_	. 14	15	28	203
	해 안 사 방(ha)	61	_	-]	-	. 7
량	해안침식지복구(km)	-	3	6	6	46
	수질정화시설(개소)	6	3	3	-	75
	마을환경사방(마을)	6		<u> </u>		. 60
사	계	147,362	21,388	24,187	30,511	238,550
업	국 고	104,067	14,972	17,682	22,066	166,986
비	지 방 비	43,295	6,416	6,505	8,445	71,564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종류

ㅇ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임도성토사면 등에 토사유출 또는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지피식생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ㅇ 예방사방

- 주택가·산업시설주변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ㅇ 야계사방

- 산간·마을주변 황폐계곡의 산기슭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 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ㅇ 사방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 ※ 저수용 또는 저사·저수겸용으로 시공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 해안사방(해안침식지 복구)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 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해안침식지 복구는 해안의 모래언덕 또는 해안산림이 파도에 침식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도막이 및 침식방지 시설을 하는 공사임.

(2) 지원 조건

ㅇ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국유림은 국고 10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백만원)

				사 업]. н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신	난액(일반회	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 조	융 자	^178 H	사구님
계		30,511	22,066	22,066	_	8,445	_
산 지 사 방	47ha	2,208	1,611	1,611	_	597	-
예방사방	20ha	1,076	753	753		323	-
야계사방	55km	7,004	4,903	4,903	-	2,101	-
사 방 댐	110개소	18,118	13,325	13,325	-	4,793	
사방댐준설	28개소	196	137	137		59	
해안침식지	6km	1,909	1,337	1,337		572	<u> </u>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 · 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ㅇ 산림청 :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042-481-4185)

○ 시·도 : 산림관련부서

ㅇ 산림환경연구소(산림자원관리소): 산림토목 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1) 선정기준

- 각 사업종류별 적정대상지로서 토사유출・산사태・침식・붕괴 등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또는 국토・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기부담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2) 우선순위

- ① 산림이 황폐되어 토사유출·산사태·침식·붕괴 등의 방지 또는 복구가 필요한 곳
- ② 가옥·농경지·산업시설·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 ③ 국토·경관보전에 저해되는 곳 등

(3) 선정절차

- 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관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함.
- 그러나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ㅇ 사업시행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6월 : 춘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계획변경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실행중 설계내용이 불합리할 때에는시・도지사가 변경 실행
- (2) 재해방지 및 국토보전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공경력과 전문인력·기술·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토록 할 수 있음.
- (3) 다만, 저수용 사방댐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댐 설계·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에서 시행원칙
 - 저수용 사방댐은 구배가 급한 계류에 설치될 경우 댐 자체의 전도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위하여 콘크리트댐으로 시공(흙댐은 집중호우시 침식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치 않도록 함)

(4) 사업비 집행방법(사업실행 체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 국고소요 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ㅇ시・도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사업 지시
- 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관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사업실행예정지 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사방사업을 실행한 주체(도산림환경연구소 등)가 사후관리함이 원칙
 -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 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

나. 보고ㆍ기타

- ㅇ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여 백

Ⅱ.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61 임산소득증대(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소득과 (과장 배영돈, 행정사무관 이문원)입니다.

I.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표고·밤·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함으로써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산촌 주민소득 중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 표고・밤・송이 등 임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배시설 현대화・규모화, 기계화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확대
- ㅇ 산나물, 산약초, 장뇌 등 단기고소득품목 개발 및 지원 확대
- 집약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임업진흥촉진법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 량	-		_	-		
١,,	계	84,326	39,481	50,855	52,171	52,841	158,523
사	보 조	8,298	7,718	9,185	7,318	7,414	22,242
업	융 자	39,665	12,524	18,905	21,811	22,274	66,822
비	지방비	6,925	6,333	6,962	6,420	6,315	18,945
	자부담_	29,438	12,906	15,803	16,622	16,838	50,514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1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나.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	나 업 량	_	· -	1	1단지	3단지	9단지
	계	· _	-	_	2,500	7,500	22,500
사	보 조	-	-	-	1,000	3,000	9,000
업	융 자	-	-			-	- [
) 비	지방비	_	_	_	500	1,500	4,500
	자부담	-	-		1,000	3,000	9,000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1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1) 표고생산자금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톱밥배지·종균 등 표고생산 재료구입비, 톱밥균상 재배시설 지원
 - o 지원대상자: 표고원목·톱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o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ㅇ 지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2년상환
 - ㅇ 융자한도액: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ㅇ 융자단가
 - 자목 1m'당(또는 톱밥배지100개, 종균100kg): 112천원(기준단가 160천원의 70%)
 - 톱밥균상 재배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2) 표고생산기반 지원

ㅇ 사업내용

- ① 표고재배 시설비: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등 지원
-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표고재배의 규모화를 위한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 ㅇ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톱밥균상재배자금은 국고 융자 70%, 자부담 30%)
- ㅇ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 o 국고보조한도액: 5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아래 지원단가에 따름)

ㅇ 지원단가

①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m'당 8,800원(국고보조 4,400원, 국고융자 4,4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중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② 표고재배단지 사업

- 원목재배단지(1개단지 지원기준)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기어라		사	업	비]	
세구사업병	사업량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05,200	257,000	205,200	432,600
o 재배시설	1단지	726,000	145,200	145,200	145,200	290,400
o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o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	22,200

※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재배시설과 저장시설은 표고재배 시설비 사업」으로 「선별·포장기 사업은 표고생산자금지원 사업으로 분할 ·변경 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균상재배단지(1개단지 지원기준)

(단위: 천원)

WH NAH	יו ען בוף		사	업	되]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800,000	320,000	460,000	320,000	700,000
o 톱밥배지생산시설	1시설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o 툽밥균상재배시설	1단지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o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o 톱밥균상재배자금	1단지	126,000	-	88,200	-	37,800
o 선별・포장기_	1조	74,000		51,800		22,200

※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산조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ㅇ 지워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1,048,350천원이내

(나) 밤생산기반 지원

ㅇ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ㅇ 지원비율

- 밤작업로 시설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조건

- 밤작업로 시설 : 연리 5.0%, 5년거치 5년상환

- 방제장비 지원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0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현실단비(설계단비)를 지원하되 ㎞당 3,000천원 이내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23,000천원 이내

(다) 대추생산기반 지원

- ㅇ 사업내용
 - 생산기반 지원 : 대추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기, 관정 및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 ㅇ 지원대상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ㅇ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 ㅇ 국고지원한도액
 - 생산기반 지원: 개별농가의 경우 16백만원(국고보조 8백만원, 국고융자 8백만원), 법인경영체의 경우 80백만원(국고보조 40백만원, 국고융자 40백만원)이내

(라)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ㅇ 사업내용
 - 야생화, 허브식물, 산나물, 장뇌, 산약초, 산과실, 잔디 등의 재배비 및 시설· 자재비 지원
- ㅇ 지원대상자 : 야생화 등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연리 5.0%, 3년거치 2년상환(단, 장뇌재배비는 연리5.0%
 10년거치 5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마)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사업내용: 밤수집기, 약제살포기, 간벌목분쇄기, 표고자동천공기, 침수통 등 생산장비 구입 지원
- ㅇ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대당 10백만원 이내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내용: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등)생산 유리온실 등 시설, 산약초・ 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작업로시설, 산과실(산머루등)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주대 등 기반시설비(묘목대 및 식재인건 비는 육자사업으로 별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지원단가: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등)생산 유리온실시설(평당 800천원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시설은 250천원이내), 산과실(산머루등)재배시설비(별도지침에 의함), 산약초・

산채류 재배시설비(평당 66천원이내), 산약초·산채 등 재배 단지내 작업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km당 3,000천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	액(농특:	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 자	7134	ハナロ
계		52,841	29,688	7,414	22,274	6,315	16,838
ㅇ표고 생산기반 지원		41,355	22,119	5,871	16,248	4,772	14,464
-표고생산기반조성	_	25,907	10,991	4,823	6,168	4,772	10,144
-표고생산자금	_	14,400	10,080	-	10,080		4,320
-표고종균생산시설	-	1,048	1,048	1,048	, -	-	-
ㅇ밤 생산기반 지원	_	5,760	3,801	1,383	2,418	1,383	576
-밤작업로 시설	770km	2,310	1,386	693	693	693	231
-방제장비	150대	3,450	2,415	690	1,725	690	345
ㅇ대추 생산기반 지원	20개소	800	320	160	160	160	320
ㅇ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4,726	3,308	-	3,308		1,418
ㅇ생산장비지원	20대	200	140		140	, -	60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	액(농특	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 자	178H	\\\\\\\\\\\\\\\\\\\\\\\\\\\\\\\\\\\\\\
o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3개소	7,500	3,000	3,000	-	1,500	3,0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01신규사업인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만 적용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관상산림식물생산 유리온실시설 : 1개단지 규모가 온실500평이상(부대시설 별도)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시설재배 : 1개단지 규모가 1만평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5인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약초·산채 등 재배시설: 1개단지 규모가 1만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5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산약초·산채 등 재배단지내 작업로 설치 : 1개단지 규모가 3,000평 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1인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다만, 표고종균생산시설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산조중앙회가 사업주관기관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1~3)

o 시·도: 산림관련부서

o 시·군: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다. 자금지원예정자

표고종균생산시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인 사업은 기재 생략함.

라. 사업시행

-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 표고종균생산시설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 ①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청장
 - ②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지원 ※ 표고종균생산시설: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보조금 교부,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o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ㅇ 산조 : 융자금 사후관리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	리기간	리브게취기조	,,1
세 간 명	부 터	까지	처분제한기준	비고
표고・대추재배시설	2001년도	2004년도	4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대추검사장비	"	"	. "	제27조 준용
밤방제장비	"	"	"	
톱밥배지생산시설	2001년도	2010년도	10년간	
저장시설	• #	· #	n.	
유통시설	"	"	"	
표고종균생산시설	"	"	"	

나, 보고 : 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청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총공통-9)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 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시·군·자치구(읍·면·동)

※ 표고종균생산시설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자격

- (1)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1)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 표고생산기반조성
 - ㅇ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조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나) 밤생산기반 지원
 - 1)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밤 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 2) 밤방제장비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다) 대추생산기반 지원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라)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한국자생식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야생화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및 산나물·산약초·산과실·잔디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마)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2001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3)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4)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ㅇ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ㅇ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워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ㅇ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ㅇ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지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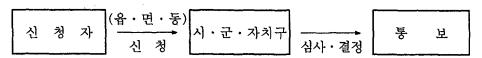
ㅇ 사업명: 표고재배시설비(단지포함)

0 변경사항

- 현행: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변경: 국고보조 10%, 융자 40%, 지방비 10%, 자부담 40%

ㅇ 사유 : 국내 표고생산시설의 적정선 유지

라.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표고종균생산시설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에게 신청, 산림청장이 심사·결정 통보

마.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ㅇ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바.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공통사항)>

사업신청자중 다음 각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99~2001)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사업별 우선순위>

- (1) 식용산림자원 생산기반 지원
- (가) 표고 생산기반 지위
 - * 법인경영체의 경우 다음의 ①~⑤순위의 재배자가 다수로 구성된 법인순으로 선정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상기 ①~④ 순위적용)

(나) 밤 생산기반 지원

- 1) 밤작업로 시설 : 5ha이상 밤나무 재배자
- 2) 밤 방제장비지원
 - ① 주산단지내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단지 이외 지역에서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대추 생산기반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대추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라)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임산물 생산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마) 생산장비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① 2001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임산물의 집약경영이 가능한 생산단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사. 기타 사항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Ⅱ. 조경수・분재소재생산

1. 목 적

o 조경수·분재산업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o 조경수·분재 전업농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o 조경수·분재 생산에 필요한 우량한 소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

3. 근거법령

ㅇ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1) Al =1		계	922	209	223	234	280	840
 사업량 (ha)	- 	: 경 수	605	161	174	185	200	600
(IIa)	분	· 재	317	48	49	49	80	240
		계	65,527	15,320	16,278	17,083	20,440	61,320
	조	: 경 수	42,363	11,771	12,701	13,506	14,600	43,800
사	분	- 재	23,164	3,549	3,577	3,577	5,840	17,520
۸۱	æļo	계	45,869	10,724	11,395	11,958	14,308	42,924
업		조경수	29,654	8,240	8,891	9,454	10,220	30,660
) 비	자	분 재	16,215	2,484	2,504	2,504	4,088	12,264
'	շԼ	계	19,658	4,,596	4,883	5,125	6,132	18,396
	자 부 담	조경수	12,709	3,531	3,810	4,052	4,380	13,140
	甘	분 재	6,949	1,065	1,073	1,073	1,752	5,256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2)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

(3)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4) 지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5) 융자한도액: 조경수 생산자는 100백만원이내, 분재소재생산자는 50백만원 이내

(6) 융자단가 : ha당 51,100천원(기준단가 73,000천원의 7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11017		사	업	ㅂ}		
내용별	사업량 (ha)	사업비	예산	액(농특회	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178 H	사구급
계	280	20,440	14,308	-	14,308		6,132
- 조 경 수	200	14,600	10,220	_	10,220	1	4,380
- 분재소재	80	5,840	4,088	-	4,088	-	1,75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 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1~3)

○ 시·도: 산림관련부서 ○ 시·군: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ㅇ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o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o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ㅇ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o 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융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ㅇ 산 조 :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고 · 기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 o 한국조경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조합장의 추천 (생산확인)을 받은자
- ㅇ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산림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 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ㅇ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m'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②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③ 기타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

바. 기타 사항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호			
	성 명			(인) 주	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내	역	·		
	는 자 금 선원)	. 계	용	자	생산자 부	-담	7	타
세부시	 업계획			뷜	첨			
				내	역			
생산기]반시설	포지면	<u>1</u> 적	시설규.	모(온실 등)	7	앙비보유	사항
			m²	동	, m²		<i>:</i>	대
영 농	경 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최종	학 력	년	월	학	교 (졸업, ⁻	중퇴, ⁴	 수료)	
영 농	교 육	7]	간	五 4	육분야		실시기된	보명
이 수		년 ~ 년	월 일 월 일			-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 3.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세부사업계획서

n n A Z W	3	는 재 2	시	-1 U	사용면적	수량	사업비	v)
생산수종별	읍 면	리	지번	지목	(m²)	(본)	(천원)	비고
								i
		,	,		'			
				, i				
			-					
					-		-	
a					_			
,		!						
, ,								
					÷	·		
								1
				,				

조경수(분재소재)생산 사실 확인추천서

생산자	주 소 성 명			상 주민등록변	호 <u></u> 번호				
포지(생선	난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 읍·면 리・	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m')		
					,				
용도 : 농어촌구조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지원 제출처 : 시・군・구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연

한국분재조합장 ①

○ ○ 군 산림조합장 인

※ 해당 단체장의 직인을 받아야 유효함.

Ⅲ. 산림복합경영

1. 목 적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산지개발과 보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있게 추진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내의 복합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3. 근거법령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약	법량(개소)	_	_	5	18	20	60
	계		_	546	1,966	2,180	6,540
사	보 조		- · .	109	393	436	1,308
업	융자	_	_	164	590	654	1,962
出]	지방비	-	_	109	393	436	1,308
"	자부담		_	164	590	654	1,96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ㅇ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특용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 등 조수사육에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 및 임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위한 다용도 관리사 시설 등

o 지워대상자

-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 자 하는 자
 - ※ 임업인의 범위(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ㅇ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 マコ보조・융자한도액
 - 55백만원 이내(국고보조 22백만원, 국고융자 3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9	법 비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	액(농특회	티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자	7131	시구.ㅁ
복합경영	20개소	2,180	1,090	436	654	436	654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나. 신청자격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ㅇ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름.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②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③ 임산물 생산 ·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 ④ 기타 임업을 전념하며 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1~3)

○ 시·도 : 산림관련부서

o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 입지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일정 포함)
 - 자부담분 등 사업비(부대비용) 조달계획
 - 세부사업대상 품목 명시(단기・중기・장기 사업등록을 균형 있게 선정)
- o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
- ㅇ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이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산물의 시장성·판로 등 지속적인 경영정보를 제공
- ㅇ 산 조 : 대출금 사후관리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	리기간	처분제한기간 -	비 77
새 산 명	부터 까지 처.		서문제안기간	비고
다용도관리사 등 시설	2001	2006	6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준용

나. 보고 · 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총공통-9)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o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최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시 가장 후순위 적용)

ㅇ 기타 사항

-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소득과(과장 배영돈, 임업사무관 이기완)입니다.

I. 임산물이용·가공시설지위

1. 목 적

- o 임산물 이용·가공 시설지원을 통한 관련산업의 육성
- ㅇ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지원을 통한 국산재 활용촉진 도모
- ㅇ 간벌·소경재 수집·운반·가공장비 지원으로 국산재 이용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임산물 이용·가공사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 ㅇ 국산 임산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확대
- ㅇ 간벌・소경재 수집・운반・가공장비 지원확대
- ㅇ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3. 근거법령

- 이 임업진홍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ㅇ 산림법 제109조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임산물이용 · 가공시설 지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92~'98년	'99년	2000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323개소	41개소	44개소	33개소	40개소	92개소
	계	75,404	19,000	19,600	11,783	15,000	34,500
사	보 조	360	1,200	300	-	-	-
업	융 자	52,183	11,300	13,220	9,426	12,000	27,600
HI	지방비	360	1,200	300	-{		~
L_	자부담	22,501	5,300	5,780	2,357	3,000	<u>6,</u> 900

나.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Ξ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1,154천m ³	138천 m³	138천m³	232천 m ³	160천 m³	320천 m³
	계	54,007	11,429	11,429	19,267	13,280	26,560
사	보 조		_	-	-	_	-
업	융 자	37,805	8,000	8,000	13,487	9,296	18,592
비비	지방비	_	_	-	~		
	자부담	16,202	3,429	3,429	5,780	3,984	7,968

다. 간벌ㆍ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86대	6대	8대	27대	20대	40대
	계	8,900	653	636	2,100	1,300	2,600
사	보 조	6,230	457	445	1,470	1,000	2,000
업	융 자	-		_	-	_	- (
固	지방비	_	-	_	-	_]
	자부담	2,670	196	191	630	300	600

라.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단위: 백만원)

2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10개소	5개소	13개소	13개소	26개소
	계		500	250	130	130	260
사	보 조		100	50	26	26	52
업	융 자	_	100	50	26	. 26	52
비	지방비	-	100	50	26	26	52
	자부담		200	_100	52	52	10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가) 지원대상자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 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ㅇ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나) 대상사업 및 지원한도액

- 지원대상사업: 칩가공, 통나무가공, 제재시설, 목각가공, 목질유기질비료 가공, 목재방부시설, 목탄·목초액, 단기소득임산물가공 등 임산물 가공시설
- ㅇ 지원한도액: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기준단가 1.000백만원의 80%)

(다) 지원조건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융자(국고융자 80%, 자부담 20%)

ㅇ 융자금리 : 연리 5%

ㅇ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98~2000)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ㅇ 최근 3년간('98~2000) 이용가공 시설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자

(마)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		۸	} '	업 ㅂ	1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업비	예산역	액(농특	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 자	^1 % PI	ハナゼ
o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지원	33개소		11,783	9,426	1	9,426	_	2,357

(단위: 백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지원금액을 자유로이 결정가능

(2)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산 임산물을 구입한 실적이 있는 자
 - 이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원자재로 사용하려는 자(동해안 산불피해목 및 재활용 폐목재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산물 실수요자(예: 인삼지주목, 가구제조용, 탄약박스 등)

(나) 지원한도액

- 원자재 구입자금: 품목에 따라 연간 원자재 가공 및 매출이 2회전 이상인 경우는 1회전의 원자재 사용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악하여 융자금액을 산정하되 국산 임산물 구입사용 실적 증명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결정. 원목의 경우에는 m'당 58,100원(융자기준원목가: 83,000원/m'의 70%), 재활용 폐목재는 톤당 구입가격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구입금 액의 70%까지 지원가능
 - 예) 연간 매입실적이 1,000m'이면서 원자재를 연중 2회전 가능할 경우 에는 육자액 신청시 1회전 매입량 500m'에 대해서만 적용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용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사업자당 연간 5억원 이내. 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8,000㎡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에 배정된 융자 계획 금액의 50%를 1인당 5억원 이내에서 우선 융자 지원 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시·군의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이 경우 8,000㎡ 이상 사용자는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중복결정 가능)

ㅇ 융자금리 : 연리 5.5%

ㅇ 융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라) 지원대상 제외자

- 최근 3년('98~2000)중 2개년 이상 가동율이 30%이하를 기록한 자
- ㅇ 최근 3년간('98~2000) 원자재 구입비 지원자금 회수 경력이 있는자

(마)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ſ									사 '	업 비		
	내	윰	별	사업량	단 비	사	겁비	예산역	백(농특	회계)	જી મી.ઘી) H r-1.
						합	계	계	보조	융 자	지방비	사구남
	국산임/	산물구	'입자금	232천 m³	0.083	19,	267	13,487	1	13,487	_	5,780

(3) 간벌·소경재 활용 장비지원

(가) 사업내용

- 국산재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 제고에 필요한 수집·운반·가공장비 구입비 지원
- (나)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독림가등,
 - ㅇ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외의 대상자는 목재파쇄기 지원
-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자부담30%
- (라)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ſ							<u>ک</u>	}	업	비	
1	내	용	岜	사업량	단 비	사업비	예산역	객(농특	·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 자	시장비	イナロ
	간벌・3 활용장비	노경 비 -	재 7입지원	26대		2,100	1,470	1,470	_	-	630

(4)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구입비 지원

(가) 사업내용

- ㅇ 단기소득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구입비 지원
- (나)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다)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20%, 자부담40%

(라) 지원조건 : 연리5%, 3년거치 2년상환

(마) 지원단가 :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구입에 필요한 사업별로 개소당 4백만원(국고

보조 2백만원, 국고융자 2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

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바)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위)

				人		업 :	4]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업비	예산역	백(농특	·회계)	기비니기	자부담
	- -		합계	계	보조	융 자	시행비	사구함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13개소	10	130	52	26	26	26	5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산림청, 시·군

○ 산림청 :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 시·군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지원, 국산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자동포장기,

박피기 지원 및 목재파쇄기 지원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 (042-481-4135~6)

o 시·도 : 산림관련부서

o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ㅇ 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지원

① 노후화된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② 임산물 가공ㆍ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 ① 국내산 목재를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 ② 국내산 단기소득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 ③ 국내산 임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 ④ 폐목재를 구입하여 사용(가공)하고자 하는 자
- 자동포장기 및 임산물박피기 지원
 - ①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독림가 등

라. 사업시행

-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종사여부 및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구입비 지원 : 산림청장

ㅇ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간벌・소경재 활용장비:산림청장이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은 정산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되는 금액과 리스 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ㅇ 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명 사후관리기	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게 난 6	부 터	까 지	시단세인기단	H 44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2001년도	2007년도	7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준용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2001년도	2007년도	7년간	"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 청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산림조합 중앙회장)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 시・군(읍・면・동)

o 산림청 :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이 시·군 : 임산물 이용가공 지원,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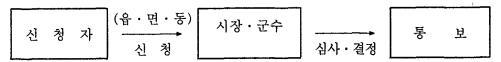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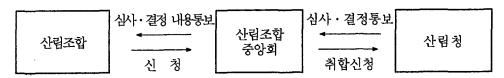
- ㅇ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ㅇ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둥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 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ㅇ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o 임산물 이용가공 지원,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o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라. 구비서류

- 이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지원, 국산 임산물 구입자금 지원, 임산물 자동 포장기 및 박피기 지원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 등록증(국산임산물 구입자금 신청자에 한함)
- o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 간벌·소경재 활용장비 지원 사업계획서 1부.(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 운영방안 포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국산임산물구입자금 : 2001년도「추진체계」자금지원 대상자 지원 우선순위와 같음. 다만,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및 임산물 자 동포장기·박피기 지원은 다음과 같음.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임산물 자동포장기 및 박피기
 - ①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임업협동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임업협동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 곶감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 임산물이용・가공지원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Ⅱ. 합판·보드류시설지원

1. 목 적

- ㅇ 보드류 시설 확충 및 노후된 합판시설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ㅇ 국산재 및 폐목재 이용확대로 산주 소득증대 및 관련산업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폐목재 재활용 및 국산 소경·간벌재 이용율 제고
- ㅇ 남양재 활엽수 위주의 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병용 생산시설로 교체

3. 근거법령

- 이 임업진흥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가공업의 지원)
- ㅇ 산림법 제109조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Ť	2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년
٨	ት 업 량	20	2	2	4	4	8
	계	71,814	8,572	4,286	2,857	4,286	8,572
사 업 비	용 자	50,270	6,000	3,000	2,000	3,000	6,000
	자부담	21,544	2,572	1,286	857	1,286	2,572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중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합판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침엽수 합판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하는 자, 노후시설을 침엽수 등 합판 생산시설로 교체 또는 중설하고자하는 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자부담이 가능한 자

(2) 지원조건

o 지 원 비 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ㅇ 융자한도액 : 업체당 시설금액의 70%이내

o 용 자 금 리 : 연리 7.5%(변동금리 적용)

ㅇ 융 자 기 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업비	예산액(7	대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융 자	시당비	ハナロ
합판 및 보드류 시설	4개소	714	2,857	2,000	2,000	-	85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o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 (042-481-4135~6)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지원대상자격을 가진 보드류 또는 합판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원신청한 업체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 농림사업 시설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증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시설도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이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사업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o 한국합판보드협회장 :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 ㅇ 한국산업은행 : 융자금이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적정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나. 집행실적 제출

○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에게 제출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자격: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나. 신청절차

- 아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한국합판보드협회장에게 제출
 - o 한국합판보드업협회장은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의견을 첨부 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다. 구비서류

- ㅇ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첨2) 1부
 - 2.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1부

사 업 신 청 서

						·			
	업	체명							
신	정	명		주민등록	번호	•	্ব	선화번호	•
	スょ	법인소재		-		-			
청	주소	공장소재							
자	법	인형태				종업원~	수		명(남,여)
	광	장업종		·		주생산	<u> </u>		
신	사	· 업 명					-		
청	,) 1	در د	계			국고융지	}	자	부담
내 용		· 업 비 (천원)			• .				
	눙	-림사업 실	!시규정 제	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1	니다.
		_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또	는날인)
	산형	김청장	귀하	,					
첨	부서-	류 : 1. 시	-업계획서(붙임1) 1	부				· .
		2. 디	l출신청자5	로(별지제	4호스] 실 : 제9)조 제4	4항 관련)	1부
			. •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관련자료는 첨부

- 1. 시설계획 개요(설치위치,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가동예정일)
- 2. 생산시설 현황
- 3. 사업운영 실적
- ㅇ 연도별 합판 및 보드류 생산실적
 - ㅇ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4. 시설 설치계획(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1) 1) T T T H	정명 기계명 규격 제조회사 수	£1).	금 액					
생산공성명		, i	수량	계	용	자	자부담	비고

- 기계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명"란에 "시설명"을 "수량"란에 "시설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교체, 신설, 중설여부를 기재

 ※ 동 내역은 은행에 통보되어 대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 5. 월별 자금투자 계획
-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7. 시설설치시 투자효과 분석
- 8. 법인개요
 - ㅇ 법인 등기부등본
 - ㅇ 법인 정관
 -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63 산림조합육성(공공)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조병철, 사무관 이명수)입니다

1. 목 적

 사유림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산주,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에 주력하는 단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주가 경영에 직접참여하지 않는 산림을 대리경영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산림사업전문기관으로 육성
 - 대리경영사업의 내실화 도모
 - 임산물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집하장, 직매장, 종합처리장)
- 장비임대, 임야중개 등 신규사업 추진
 - 산림사업시행자 제도의 정착 도모

3. 근거법령

- ㅇ 산림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산림사업의 시행자)
- ㅇ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약	보량	143조합	145조합	145조합	146조합	146조합
사업비	계	48,253	13,410	15,810	15,810	47,430
	보 조	6,885	705	705	705	2,118
	융 자	32,465	12,000	14,400	14,400	43,200
	지방비	4,792	705	705	705	2,118
	자부담	4,111			-	_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조	ㅇ조합운영비 보조		정상: 6백만원 보통: 12백만원 기초: 18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시·도 →시·군→조합
융자	o 조합사업운영 (지역조합 및 중앙 회 운영자금, 조합 자체 특화사업, 시 설자금 등)			산림청→중앙회 →조합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내용별		사업비 예산액(보조:일반회계, 융자:농특회계)				ગે મદેવો	기비다			
		합계	계	^) '%' □]	자부담					
계	146조합	15,810	15,105	705	14,400	705	-			
- 조합운영비	146조합	1,410	705	705	-	705	_			
- 조합육성	146조합	14,400	14,400	_	14,400		_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합운영비 보조 : 시장·군수 ○ 조합육성자금 융자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o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042-481-4211~2)

o 시·도: 산림관련 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416-9421~2), 회원지원부(02-416-9419~20)

o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ㅇ 사업수익성과 성장성이 높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에 우선지원
 - ㅇ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비 지원
 - o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비 지원
 - o 청사, 임산물직매장 시설 및 운영, 집하장 시설
 - ※ 직매장, 집하장시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출선정절차

- ㅇ 산림조합장은 2001년 1월까지 조합육성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청
- o 중앙회장은 지원기준을 마련 검토결정한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2001년 2월까지)
- ㅇ 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은 산림청장의 숭인후 융자 확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이 시・군: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ㅇ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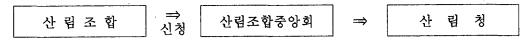
나. 보고・기타

- o 시·도는 산림청에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총통9)
- o 중앙회는 융자금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총민 49-1)
- o 보조·융자사업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신중 검토 실행
- o 시장·군수는 산림조합이 신청한 2001년도 산림사업시행자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
- o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대리경영확대계획을 수립 산주가 직접경영하지 않는 모든 산림으로 확대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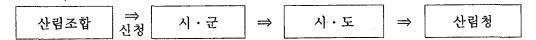
가. 산림조합육성자금 융자사업

- ㅇ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 ㅇ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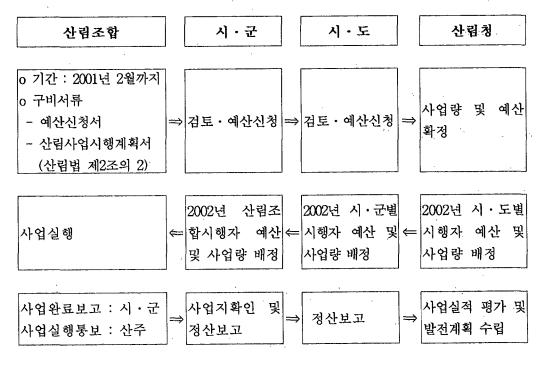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나. 조합운영비 보조사업



※ 참고

산림사업시행자제도 추진 절차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소득과(과장 배영돈, 서기관 윤정수) 입니다. 단, 임산물 수출촉진은 산림청 국제협력과(과장 김형광, 행정사무관 송경원) 입니다

I. 임산물유통구조개선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농산촌 소득중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 o 국내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통한 국산재 활용 촉진, 목재자급을 제고 및 산주소득증대 도모
- 물류비, 수출촉진경영비, 해외시장 개최 활동비 및 수출원자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한 임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1) 농림수산물물류센터

(단위 : 백만원)

Ť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	-	2	(2)	(1)	(1)
사	계	-	-	1,429	2,817	851	851
	보 조	-	_	1,000	1,972	600	600
업	융 자	-	-		_	-	- 1
,,,	지방비		_	429	845	251	251
 H]	자부담	-,					

※ '99년 신규사업으로 계속(4년간) 사업임.

(2) 임산물종합유통센타

(단위 : 백만원)

1							
Ť	그 분	분 '92~'97년 '98년 '99년 20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1	(1)	1	(1)	(1)	1
	계	21,234	6,016	2,610	5,892	8,299	17,488
사	보 조	11,817	4,315	630	5,892	5,856	15,508
업	융 자	6,592	1,191	1,386	_	2,443	1,386
비	지방비		÷	_	-		_
	자부담	4,523	510	594	_		594

(3) 임산물직거래사업

(단위 : 백만원)

7	7 분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		_	_	-	. –
	계	-	_	19,393	15,011	6,500	43,551
사	보 조	-		1,093	712	_	3,846
업	융 자	-	-	14,657	11,560	5,750	31,680
ㅂ	지방비		-	_	-	-	-
	자부담	-		3,643	2,739	750	8,025

(4)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단위: 백만원)

Ŧ	1 년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	_	1개소	2개소	3개소
	계	-	_	_	1,800	3,600	5,400
사	보 조	-	-	_	900	1,800	2,700
업	융 자	-	-	-	-		
비	지방비	-	-	_	360	720	1,080
	자부담	_			540	1,080	1,620

(5)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단위 : 백만원)

Ŧ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50개소	70개소	105개소	212개소	640개소
	계	553	500	1,500	1,250	2,200	6,600
사	보 조	387	100	300	250	440	1,320
업	융 자	-	_	200	50	20	60
비	지방비	-	100	300	250	440	1,320
	자부담	166	300	700	700	1,300	3,900

(6) 임산물유통정보화

(단위 : 백만원)

Ť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	-	-	-	-	-
	계	-	. –	_	347	687	_
사	보 조		-	_	347	687	_
업	융 자		!	- · ·	_	-	_
비	지방비		· <u></u>	-	-	-	-
	자부담	_		-	-		

(7) 임산물 수출촉진

(단위 : 백만원)

Ŧ	1 분	분 '92~'97년 '98년 '99년 2000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٨	·\업량(톤)						
사	계	565	920	7,441	9,745	9,679	35,326
'	보 조	395	460	2,000	2,997	2,997	8,991
업	융 자		-	2,800	2,800	2,800	16,800
비	자부담	170	460	2,641	3,948	3,882	9,535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2001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농림수산물물류센터
 - ㅇ 사업내용
 - 대규모 소비지역에 대량 직거래가 가능한 종합 직거래 유통센타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생산자단체(임·농·수협)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에 참가
 - 사업기간 및 개소 : '99~2002(4개년), 1개소※ 산림청,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사업 추진
-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경기)
 - ㅇ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물류장비 등
 - 지원비율: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기관별 지분(산림청 5%, 농림부 75%, 해양수산부 20%)에 따라 지원
- (2)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ㅇ 사업내용
 -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 ·국산재 『벌채·수집·가공·공급』 등의 종합기능을 갖춘 대규모 유통시설 설치
 - •설치지역: 강원도 동해시
 - •사업기간: '99~2001년
 - 여주임산물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및 국산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료 구입비 지원
 - ㅇ 지원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 ㅇ 지원내용
 - 제2유통센터 설치 : 목재가공공장 등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설치비
 - 여주유통센터 원료구입 : 국산재 구입비

- 0 지원비율
 - 제2유통센터 설치 : 국고보조 100%
 - 여주유통센터 원료구입 : 융자80%, 자부담20%

(3) 임산물직거래사업

- ㅇ 사업내용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밤·표고·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집중출하기 수집·저장한 후 비출하기 공급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직거래 판매장 : 대량소비지 대도시(광역시 이상)에 직판장을 설치, 산지임산물을 소비자 와 직거래
 - ※ 이하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이라 한다
- ㅇ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임산물 생산영농조합법인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의 법인
- ㅇ 지원비율
 - 단기소득임산물수집 : 융자80%, 자부담20%
 -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직판장 임차비 : 융자100%(건물 또는 토지임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실 비융자 지원)
 - 원료구입비 및 운영비 : 융자80%, 자부담20%
 - ※ 매장설치비, 쇼케이스(저온판매대) 등 인테리어 비용도 동일한 조건 으로 지원

(4)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야생화, 조경수 등 관상자원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지조성비, 시설비 및 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대한민국자생란협회, 조경수협회, 분재조합 등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상자원 관련 법인, 전문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50%, 지방비20%, 자부담30%(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일 경우 지방비 50%)
- ㅇ 국고지원 한도액: 1개소당 900백만원

(5)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ㅇ 사업내용
 - 임산물표준출하 : 산림청에서 제정·고시한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규격출하하는 포장자재비 지원
- 포장디자인개선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ㅇ 지원비율 :
 - 임산물표준출하 : 국고보조20%, 지방비20%, 자부담60%
 - 포장디자인개선 : 국고보조20%, 지방비20%, 국고융자20%, 자부담40%

(6) 임산물유통정보화

- ㅇ 사업내용
 - 유통정보시스템 : 임산물에 관한 생산·가격 정보를 DB화하여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임업 인들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정보획득 및 임산물 판로확보 등 직거래 활성화 도모

ㅇ 지원대상자

-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7) 임산물 수출촉진

-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 지원시설의 종류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임산물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장비 구입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임산물 선별기 구입비,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비,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 수출홍보물제작,시장개척단파견, 한·일 밤

간담회 지원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수출 목제품 원자재 구매 지원

ㅇ 지원조건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Ģ	국 고	지 4	신	자부담
사 별 70 	/1	소계	지원유형	지원비율	2001예산	시구현
계	9,679	5,797	-		5,797	3,882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5,518	2,836	_	-	2,836	2,682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2,696	1,348	보조	50%	1,348	1,348
- 포장디자인 개발	60	42	보조	70%	42	18
- 수출촉진 검역비지원	100	100	보조	100%	100	-
- 포장기계・장비구입	882	441	보조	50%	441	441
- 임산물선별기 구입	1,270	635	보조	50%	635	635
- 수출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	480	240	보조	50%	240	240
- 임산물무역정보개정	30	30	직접수행	-	30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161	161			161	_
- 수출홍보물 제작	36	36	보조	100%	36	-
- 시장개척단 파견	101	101	보조	100%	101	-
- 한・일 밤 간담회	24	24	보조	100%	24	_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4,000	2,800	용자	70%	2,800	1,20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Ħ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여			- 특)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자	71.9 41	시구현
계		32,433	23,393	12,380	11,013	1,417	7,623
o농림수산물물류센터	1개소	857	600	600		257	-
o임산물종합유통센터		8,910	8,299	5,856	2,443		611
-여주유통센터 원료구입	29천m³	3,054	2,,443	_	2,443	_	611
-제2유통센터 설치		5,856	5,856	5,856	_	-	-
・시설비(건축비)	6.697m³	2,934	2,934	2,934	-	-	-
•기계장비	7종	2,922	2,922	2,922			
ㅇ임산물직거래사업		6,500	5,750	_	5,750		750
-단기소득임산물수집		3,750	3,000	_	3,000	_	750
-생산자직거래판매장	1개소	2,750	2,750	-	2,750	-	
o관상자원유통단지조성	2개소	3,600	1,800	1,800	-	720	1,080
o임산물표준출하지원	210개소	2,100	420	420		420	1,260
ㅇ포장디자인개선	2개소	100	40	20	20	20	40
ㅇ유통정보시스템	1식	537	537	537		_	
ㅇ임업인홈페이지구축	50명	150	150	150	_	_	- '
o 임산물수출촉진		9,679	5,797	2,997	2,800		3,882
-우수임산물수출활성화		5,518	2,836	2,836	_	_	2,682
-우수임산물해외개척		161	161	161	-	_	-
-수출원자재구매지원		4,0000	2,800	_	2,8000	<u> </u>	1,200

<추진체계>

가. 농림수산물물류센터 설치사업(임산물 분야)

(1) 사업주관기관 : 경기도

(2) 사업담당부서

ㅇ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ㅇ 지방자치단체 : 산림과

(3) 자금지원예정자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4) 사업시행

-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배경
 - ㅇ 농림수산물물류센타 설치 사업계획(농림부 주관)에 따름,
 - 다만, 임산물 분야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비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집행방법

- ㅇ 보조금 내시 및 자금배정 : 임산물 분야 소요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 자가 산림청에 신청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이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나.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1) 사업주관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산림조합중앙회: 임산유통부(02-416-9423~4)
- (3) 자금지원예정자 : 산림조합중앙회
- (4) 사업시행
-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2유통센터시설(설치)규모, 기계장비 종류와 수량 및 추진일정, 여주유통센터 원료구입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ㅇ 융자금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에 지원 신청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융자금 포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주관 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다. 임산물직거래사업

(1) 사업주관기관

- o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o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시·도(시·군·구)

(2) 사업담당부서

- ㅇ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4)
- ㅇ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시·도(시·군): 산림관련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ㅇ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o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 ㅇ 단기소득임산물수집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ㅇ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사업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집행방법

- ㅇ 단기소득임산물수집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금을 배정 받아 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에 지원
- ㅇ 임산물생산자직파장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융자예산 배정숭인을 받은 후 사업숭인을 하고 그 내용을 산림조합 및 지원대상 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 자체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하되 실적확인전 지급

(5) 사업비 검정

○ 임산물 생산자직판장 설치완료시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라.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o 시·도(시·군): 산림관련부서
- (3) 자금지원예정자 : 대한민국자생란협회, 조경수협회, 분재조합 등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상자원 관련법인, 전문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ㅇ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자부담 능력, 부지확보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ㅇ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 사업비 지원방법

o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은 후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마.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구청(이하 시·군 이라 한다)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o 시·도(시·군): 산림관련부서
- (3) 자금지원예정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ㅇ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융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ㅇ 보조금은 시 · 군에서 집행
- ㅇ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융자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의거 지원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바. 임산물유통정보화

(1) 사업주관기관

ㅇ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산림청, 시·도, 산림조합중앙회

(2)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o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4)

(3) 자금지원예정자

ㅇ 유통정보시스템: 산림조합증앙회

ㅇ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4) 사업시행

(가) 사업대상자 선정

o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 시·도지사가 선정

(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ㅇ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
- ㅇ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사업희망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다) 사업비 지원방법

ㅇ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행하되 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함.

-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사. 임산물 수출촉진

-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42-481-4145~7)
-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산물 수출업체

(4)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ㅇ 사업시행자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해외개최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행정사항>

가. 농림수산물물류센터 설치(임산물 분야)

(1)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2) 보고 · 기타

- 경기도지사는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경기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임산물종합유통센터

(1)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숭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과리

71)	7		사후관리기간		리 브 에 된 기 조	ul -	
^11	재 산 명 부터	까지	처 분 제 한 기 준	비고			
- 건물	및 부	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2) 보고 · 기타

- ㅇ 보조사업자는 공사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보조사업자는 유통센타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하여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행년도 12월31일까지 『총공통-9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장에게 제출

다. 임산물직거래사업

(1) 사후관리

(가) 단기소득임산물수집

- 이 밤, 표고, 대추 등의 단기소득임산물 집중출하기에 생산자로부터 구매· 비축한 후 비출하기에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 ㅇ 자금의 타용도 사용은 제한되며, 연간 1회이상 회전

(나) 임산물생산자직판장

- ㅇ 융자금 상환 이전까지 자금을 타용도로 (임차건물 포함) 사용할 경우 회수조치
- 원료구입자금은 연간 1회이상 회전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비치하고 운영토록 한다.

(2) 보고·기타

ㅇ 단기소득임산물 수집사업 추진실적을 익년 1월31일까지 보고

라.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사후관리기간 : 준공부터 10년간(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준용)
 - 처분제한내용: 매각, 양도, 교환, 담보,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용도 등

(2) 보고 · 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o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마.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1)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2) 보고·기타

- o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ㅇ 시·도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바. 임산물유통정보화

(1) 사후관리

o 유통정보의 신속제공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관리

(2) 보고·기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사업 실적 및 집행실적을 정산보고

사. 임산물 수출촉진

(1) 사후관리

- ㅇ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현장점검 포함)
- ㅇ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지원 등 조치
- 포장기계·장비구입, 임산물 선별기 및 운송차량 구입사업은 사업비지원후 기계장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경우 시정조치(사업비 회수조치 등)

(2) 보고 · 기타

ㅇ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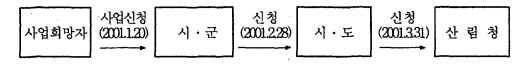
가. 농림수산물물류센터 및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o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수행, 신규대상자 선정계획 없음.

나. 임산물직거래사업

- (1)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절차
 - (가) 단기소득임산물수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 시·도



(2) 신청자격

- (가) 단기소득임산물수집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나) 임산물생산자 직판장
 - o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임산물생산영농조합법인
 - ㅇ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
 - ㅇ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하는 자본금 3억원 미만의 법인

(3) 구비서류

(가) 임산물생산자직판장 : 『별지 제3호 서식』사업계획서 1부

(4)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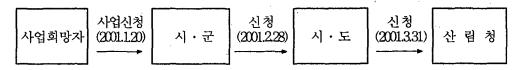
(가) 선정기준

- ㅇ 단기소득임산물 수집 : 직거래 판매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 ㅇ 임산물 생산자직판장 : 신청자격이 있는자로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코자 하는 법인

다.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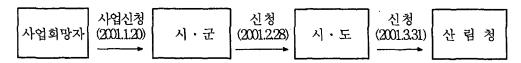
(4) 구비서류

ㅇ 농릮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ㅇ 회원수가 많고 자부담 및 부지확보 능력이 있는 관상자원 관련법인

라.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 · 군
- (2) 신청자격: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4) 구비서류

ㅇ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ㅇ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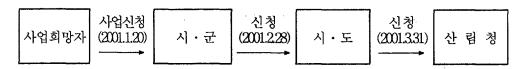
마. 임산물유통정보화

- (1) 신청서 제출기관
 - ㅇ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
 - o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시·군

(2) 신청자격

- ㅇ 유통정보시스템 :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홈페이지구축 :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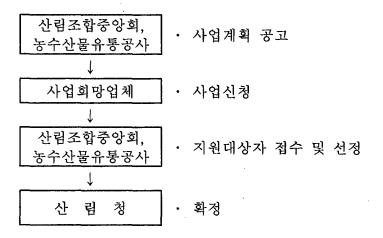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임업인홈페이지구축)



- (4) 구비서류(임업인홈페이지구축)
 - ㅇ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우선선위: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단체 포함),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운영자중 PC보유자, 인터넷 사용가능자
 및 홈페이지 운영능력이 있는자

바. 임산물 수출촉진

- (1) 신청서 제출기관
 - ㅇ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ㅇ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 (2) 신청자격
 - ㅇ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3) 신청절차



(4) 구비서류

- ㅇ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
- o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ㅇ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ㅇ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업체
 - 당해연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ㅇ 신청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 지원금 배정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물 직판장 경영장부

년월일			물 구 입		임	산 물 판	매
[[년 년	품명	구입처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			
			-	,			
	-			-			
,							
		40.					
						,	•
	,						
							,
,							
;		:	`		!	1	
						i i	
	İ						
	,	,					0.25
	ļ	į	٠,		,	ī	1 1 4
		,					
	,					**.	
		!					

※ 본 내용이 수록되면 경영장부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물 생산·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설치 실적보고

1. 직판장 개설조합 현황

법	인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2. 직판장 설치 계획 대 실적

ㅇ 직판장 설치장소

			시설	규모	사업비 투자액(천원)						
구 분	단위	계획	실적	7	네 홍	4		실 7	वे		
				계	국고 용자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자부담		
겨											
ㅇ직거래	판매장							_			
ㅇ원료구	입										
							,				
ㅇ매장설	치비		•								
								_			

※ 직판장 건물 또는 토지 임차계약서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임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장・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산물생산 · 가공법인 직거래판매장 사업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법	인	명	,			전화번호	
주		소					
대	丑	자	성 명		Z	위	주민등록번호
회	원	수		명	법인]등록기관	

※ 법인등록 사본 첨부

2. 지원신청내용

ㅇ 직판장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모	 나업비(천원 국고융자) 자부담	비고
계					
ㅇ직거래판매장	m²				
ㅇ원료구입	톤		,		
o 매장설치비					

- ㅇ 임산물직판장 설치 예정지 :
 - 직판장 임차건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주소 :

3. 연간 판매계획

(단위 : kg, 천원)

품 목	1일	평균	연간(일)운영	
T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d .			
	·				
			,		

위와 같이 임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 장・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2000.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	전화 :	FAX:
주 소		,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위 성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수출실적		수출기간	포장운송비(원/kg)			
(HS번호)	물량(kg)	금액(\$)	기원기선	포장재	운송비	계

위와 같이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1. . . .

신청인 :

(인)

붙임: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 2. 포장재 제작사양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체 명			전화 :	FAX:	FAX:			
주 소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등	·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1. . .

신청인 :

(인)

붙임: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포장기계·장비, 선별기, 운송차량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체 명			전화:	FAX:			
주 소							
대표자	성	명	직 위	록번호			
네표자				_			
사 업 자			rl rl al	직 위	성 명		
등록번호			담 당 자				

2. 지원 신청내역

사업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포장기계・장비									
- 선별기									
- 운송차량									

위와 같이 포장기계·장비, 선별기,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1. . .

신청인 :

(인)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

1. 신청인 현황

업체 명	``	전화 :	FAX:		
주 소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홍콩(), 유럽(), 기타()
21 w) X D	(국문)	(영문)
참가품목	(한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0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1.

신청인 :

(인)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첨부 1).

-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체 명		전화 :	FAX:	
추 소				
대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m', 백만원)

N 어마	r]-z]/o]/i)		구입비 재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량	단가(원/m³)	계	융자	자부담	사람생 조세시
	-	,	1.	\ .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1. .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첨부 1).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m', 천\$)

어느병 품목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연도별	(HS번호)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4
계						:		
1998								
1999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m³, 천\$)

품목	수출	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HS번호)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丁艺山
			•			-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m', 천\$)

품 목	목 신용장 내용						
(HS번호)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수출국	
-			L				

Ⅱ.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1. 목 적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의 근대화 촉진
- o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o 임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3.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겁량(개소)	_	_		_		
사	계	104,367	29,750	46,500	64,350	64,350	212,250
업	용 자	83,493	23,800	37,200	51,480	51,480	169,800
비	자부담	20,874	5,950	9,300	12,870	12,870	42,450

^{※ &#}x27;92~'98년은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출하조절사업 및 임산물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0배 경
 - '98까지는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 전략 품목에 대해 집중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제고
-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ㅇ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ㅇ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5% - 기 간 : 1년이내

ㅇ 융자한도액: 2.000백만원이내

ㅇ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o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산지유통 ·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人	}	십 1	1]	
내용	岜	사업량	사업비	예신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계	보 조	융 자	~178 PI	사무급
임산물생 육성사업	산자단체		64,350	51,480	-	51,480	-	12,870

※ 융자조건 : 연리 5%, 1년이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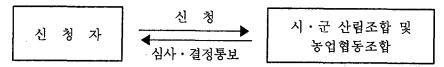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ㅇ 산림조합
 - 중앙회 임산유통부(02-416-9423)
 - 도지회 관리과(지도검사과)
 - 시·군 산림조합 금융과(지도과)
- ㅇ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원예특작부(02-397-5726)
 - 도지회 유통가공과 (지도검사과)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및 농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 (가) 신청서 제출기관: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 (다)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 (라)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ㅇ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ㅇ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o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 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 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ㅇ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마) 신청시기 : 2001. 1. 1~1. 31
- (바)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사)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②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③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④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법인경영체

(자)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 1. 31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 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1.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ㅇ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 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1.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시ㆍ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이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및 융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 이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함.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2001.1.1~1.20까지임.
- ㅇ 기타 사항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물 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현황

법인경영체명				
소 재 지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설립	법적근거	
조합원수		출 ス	가 금 액	천원
시 설 현 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	기 타
71243	m² r	1	대	
	품목 구분			
재 배 현 황	면적(ha,m') 생산량 (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ול או או או		
•			계	용 자 **	자부담	사업소재지
	-			-		

2001. . . .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산림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Ⅲ.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 목 적

 방,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ㅇ 지원규모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조절 시설
- ㅇ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근거법령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재정지원) 및 제8조(유통구조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Ť	보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량(개소)	68	15	20	25	48	120
사	계	19,751	4,050	6,000	7,500	12,625	36,000
^「	보 조	3,197	810	1,200	1,500	2,525	7,200
업	융 자	6,687	1,215	1,200	1,500	2,525	7,200
	지방비	2,125	810	1,200	1,500	2,525	7,200
비	자부담	7,742	1,215	2,400	3,000	5,050	14,4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ㅇ배 경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93년부터 저장시설비 지 원
- 곶감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건조시설 지원
- o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ㅇ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개소당 300백만원(250m²)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ㅇ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및 장비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융자조건 : 연리 5%(3년거치 7년상환)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자부담		
		합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イナ日		
계	48개소	12,625	5,050	2,525	2,525	2,525	5,050		
ㅇ 임산물 저장시설	38	11,4900	4,560	2,280	2,280	2,280	4,560		
ㅇ 건조시설	10	1,225	490	245	245	245	49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ㆍ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산림청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042-481-4137~8)

- 건조시설 :

 $(042-481-4135\sim6)$

o 시·도: 산림관련부서

o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ㆍ군에서 선정

라. 사업시행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서 융자 신청
 - 산림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o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o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방문 및 감독 실시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ㅇ 산림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 부터	리기간 까지	처 분 제 한 기 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 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 보제공	법인세법시행 규칙제27조

나. 보 고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 49-1)
- ㅇ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ㆍ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o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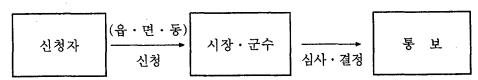
17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 나.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증 단기
 소득임산물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워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o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워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ㅇ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o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o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o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o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ㅇ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ㅇ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주산다지에서 다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④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바. 기타 사항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신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함.

Ⅲ.인 력 육 성

여 배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조병철, 임업사무관 조은수) 입니다.

1. 목 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 확대
- ㅇ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ㅇ 임업경영 사업실적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산림사업의 내실화 추진

3. 근거법령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동법시행령 제10조(독림가 지원),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지원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계	,	713명	230명	150명	156명	450명
사업량	독	림	가	239	100	60	60	180
	임업	幸ス	세자	474	130	90	96	270
		계		27,998	10,000	12,900	13,500	38,700
사업비	독	림	가	13,919	5,000	6,000	6,000	18,000
VLĦ HI	임업	幸ス	네자	14,079	5,000	6,900	7,500	20,700
	융		자	27,998	10,000	12,900	13,500	38,70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임업경영 기반을 갖추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젊고 유능한 임업인을 후계자로 선발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선도할 핵심주체로 양성

(2) 지원 대상자 및 우선순위

ㅇ 자금지원 대상자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독림가로 선발된 자 중 독림가·임업후계자 협회(도지회(부)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

(3) 지원조건

ㅇ 유자한도액: 독림가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o 융 자 조 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ㅇ 지원비율 : 융자 100%

(4) 지원내용

ㅇ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내 용 별	사업량	æ) -1]	예 신	· 액 (농특	ની મીન્દ્રો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사구님		
계	156명	13,500	13,500		13,500		-		
독 림 가	60	6,000	6,000	-	6,000		-		
임업후계자	96	7,500	7,500	·	7,500	_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195~6)

o 시·도: 산림관련 부서, 산림조합중앙회 각 도지회

o 시·군: 산림관련 부서,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림가로 선발된 자

라.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자격을 갖춘 사업회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 독림가·임업후계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숭인 요청
-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산림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ㅇ 추진일정

- 자금신청 : 1월~12월 - 자금대출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융자금 회수
- ㅇ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 등을 보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사항 등을 임업후계자・독립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산림조합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산림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
 계자에게 정부 산림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강화
-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관리 : 해당사항 없음

나. 보고·기타

o 시·도(시·군)는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총민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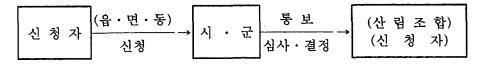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나. 신청자격

o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 한규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림가로 선발된 자가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ㅇ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ㅇ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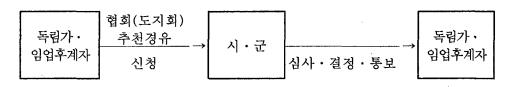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업진홍촉진법 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인정절차및 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 독림가로 선발된 자

이 신청절차 (자금융자)

독림가·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협회(도지회(부) 포함) 추천경유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I. 임업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용하임업사무관 제경영)입니다.

1. 목 적

- ㅇ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ㅇ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업전문가(산림경영관리자) 양성
- o 임업기능인영립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임업교육훈련 및 영림단 장비지원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교육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목구조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재배 기술교육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장비 보강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확대

3. 근거법령

- ㅇ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기금의 용도)
- ㅇ 임업진홍촉진법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ㅇ 임업진홍촉진법시행령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1) 전문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2~'98년 '99년 2000년 2001		2001년	2002~2004년
사 업 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6,236	1,425	1,771	2,142	5,646
가입미	보 조	6,236	1,425	1,771	2,142	5,646

(2)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7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2004년
사	업 량	203단 (2,436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120단 (1,440명)
계사		4,188	566	566	566	3,330
법비	보 조	4,188	566	566	566	3,330

5. 2001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추진 배경

- > 농산촌 인력난이 심해짐에 따라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 작업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 산림작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 실시
- ㅇ 산림경영계획,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산림경영관리자의 육성

(나) 지원내용

- ㅇ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임업기능인 및 산림경영관리자 교육훈련비 지원
- ㅇ 교육훈련에 필요한 임업기계 장비 등 지원

(다) 지원대상

- 이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훈련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 ㅇ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임업훈련기관 :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 (라) 지위조건: 국고보조

(2) 기능인영림단 장비지원

(가)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나)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다) 지원대상자 : 기능인영림단

(라) 사업내용

ㅇ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

○ 사업량 : ('99) 291단 3,399명 → (2007) 850단 10,000명

※ 2000 신규조직 : 30단 360명

ㅇ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톱	풀깍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윈	치	차량	무육도구	안전장비
6대	2대	4대	2대	11	대	1대	12조	12조

(3) 교육대상자 선정

(가) 산림경영관리자 양성

- ㅇ 대상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정규대학 3년이상 수료자중 임업관련 학과 출신자
 - 숲가꾸기 교육 2주이상 및 영림단 교육 이수중인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임업관련 자격증 소지자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ㅇ 선정방법 : 관련기관 또는 학과장 추천자 및 임업관련학과 출신자 우선 선발

(나) 임업기능인양성

- ㅇ 대상자
 - 18세이상으로 각종 산림작업을 담당할수 있는 신체건장한 자
 - 관할지역 산촌거주자로서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자
 - 산림작업에 경험이 있는 자

ㅇ 선정방법

-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에서 기능인영림단 양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일반인이라도 지역산림조합 및 임업훈련원에 기능인교육을 희망하면 훈련원의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전문인력 양성

(단위: 백만원)

내 용 별				,	\} <u>'</u>	업	비	
		사업량	합계	예신	예산액(일반회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사구님
계		3개소	2,142	2,142	2,142		_	
	인 건 비		549	549	549	_		-
임 업 훈련원	경상비및훈련사업비		698	698	698		-	1
	교육장비구입		895	895	895	, -	-	-

(2) 영립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사	Ċ	겁	#]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예소	<u> </u>	-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융자	보조	7131	7T =
계	30단 (360명)	566	566	-	566	_	
민유림 영림단 증 설	30단 (360명)	566	566	-	566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 (042-481-4206)

다. 사업시행

(1) 전문인력양성

산 림 청

- ·사업계획의 총괄·조정숭인
- ·사업추진의 평가 및 총괄 지도·감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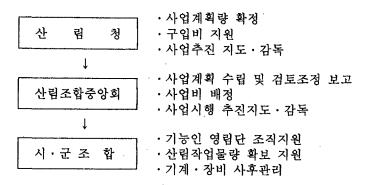
산 림 조 합 중 앙 회

-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1 1

임업훈련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 영림단 장비지원
- ㅇ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산림조합
- 사업 추진



- 지원형태 및 수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기 준 : 국고 100%

라.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
 11.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마. 사업비 지원방법

○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장 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립단 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6. 2002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1. 11.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나. 신청절차

다.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제3호서식)

Ⅱ. 임업기술지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지원과(과장 조병철, 행정사무관 이명수) 입니다.

1. 목 적

임업기술지도 체계를 확립하여 전체 산림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자원화와 210만 산림소유자의 경영의욕 고취 등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산주가 원하는 임업기술 정보의 조기제공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적시 해결
- ㅇ 임업기술지도원의 경영지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경영지도 및 행정편의 제공
- 지도원 배치기준에 의한 균등 배분의 자금지원 방식을 대리경영 계약체결 실적, 대산주 지도활동 등 기술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지급하는 성과주의 방식 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되도록 추진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등), 동법시행령 제13조(임업기술 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 량	기술지도원(명)	787	787	787	787	787
량	지도차량(대)	333	30	30	30	90
1 .	계	69,080	6,306	7,556	7,556	30,000
사	보 조	33,867	4,984	5,984	5,984	24,000
업	융 자			_	_	-
闰	지방비	~	-	. –	_	_
: 5	자부담	34,793	1,322	1,572	1,572	6,00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국내외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를 보급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 하고,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임업기술지도원의 지도능력 향상

ㅇ 지워대상

- 임업기술지도원(조합당 5~6명, 총 787명 배치)
- 임업기술지도장비 (찌프, PC 등)
- 임업기술정보지(산림지)

ㅇ 지원비율

- 임업기술지도원 인건비 : 국고 80%, 자부담 20%

- 지도장비 및 산림지 : 국고 70%, 자부담 3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시	· 업	Ħ	l .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예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시장미	사수님
계		7,556	5,984	5,984	_	-	1,572
기술지도원	787명	6,953	5,562	5,562	-	_	1,391
지도장비(찌프)	30대	410	287	287	-	-	123
산 림 지	276천부	193	135	135			5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042-481-4211~2)

○ 산림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416-9419~20)

o 시·군 산림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ㅇ 사업계획 수립
 - 조합은 대리경영 계약목표, 대산주 기술지도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
 - 중앙회는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조합별 지원계획을 수립,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청은 중앙회장이 제출한 기술지도사업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자금지원 요청시 교부결정
- o 사업비 집행방법 : 산림조합증앙회에서 집행
- ㅇ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1월~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중앙회는 보조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되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중앙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 기술지도원 급여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1월전에 대리경영 계약실적, 대산주 기술지도활동 등 실질적인 임업기술 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지원(성과주의)하고, 정산시 이를 보고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o 산림조합장 : 임업기술지도원을 지도·감독

ㅇ 산림조합중앙회장 : 지도원의 채용 · 임용 및 임업기술지도원 교육

ㅇ 산림청장 : 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기준 마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 처분제한기준		
শৈশত ত	부터	까지	시판제안기판		
网 프	취득일	6년	조달청 고시 제96-2호('96.1.30) 물품내용연수 적용		

나, 보고·기타

ㅇ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01.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총공통-9)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신청자격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

나. 신청절차

			1		7
산림조합	⇒ 신청	산림조합중앙회	⇒	산 림 청	
					-

다.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Ⅳ.산림복지기능증진

여 백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용하, 임업서기관 최준석) 및 산림자원과(과장 윤영균, 임업사무관 신대복) 입니다.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다양한 휴양 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산촌 지역사회 소득증대 도모
- 지역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및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의 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 ㅇ 지역의 고유식물군락 특성을 살린 생태숲 조성

2. 추진방향

- ㅇ 산림휴양수요를 고려하고 휴양패턴에 부합한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
- ㅇ 자연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o 자연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간 확충
 - ㅇ 입지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휴양공간의 특색화
 - ㅇ 지역별 향토수종 및 자생식물의 현지외 보존 기능 강화
 - o 산림사료의 수집·관리의 체계화
 - ㅇ 대국민 자연교육·학습장·생태관광 제공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1조~제33조, 자연휴양림조성·관리운영지침(산림청예규 제489호)
- ㅇ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생태숲 조성
 - 산림법 제34조 ~ 제34조의2, 제10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 업 량	109	46	41	47	88
	계	179,302	24,233	30,533	37,326	87,911
사	보 조	84,157	11,383	14,923	18,844	43,875
업	융 자	15,040	1,680	1,680	1,680	3,780
벼]	지방비	73,119	10,450	13,210	16,082	38,636
,	자부담	6,986	720	720	720	1,62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

- ㅇ 지원대상자 선정
 - 공유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보조)
 - ·시·도지사가 선정
 - 사유림 자연휴양림(융자)
 -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 숭인을 받은 자
 - 시, 도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을 신규・보완조성, 생태숲을 조성코자 하는 자

ㅇ 지원단가 및 조건

- 자연휴양림

· 신규 : 개소당 12억원을 2년간 분할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보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년도에 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융자 :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지원(7년거치 8년상환 연리 5.0%)

- 산림욕장

• 신규 : 개소당 4억원을 당해년도에 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조성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등 : 40억 규모(신규조성)

•전시원, 온실, 연구시설, 교육동, 관리사, 관찰로 등 : 60억 규모

ㆍ기반시설, 상징숲, 온실, 교육동, 관리사, 관찰로 등 : 50억 규모

ㅇ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욕장 : 주차장, 전망대, 벤취, 자연관찰원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ㅇ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금액단위: 백만원)

			사	·	3	비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산	액(일반,	농 특)	ગામામા	기보다
		합 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32	15,000	9,200	7,520	1,680	5,080	720
· 자연휴양림조성	21	10,600	7,000	5,320	1,680	2,880	. 720
- 조 성	6	3,600	2,520	2,520	- -	1,080	
- 보 완	9	3,600	1,800	1,800		1,800	_
- 용 자	4	2,400	1,680	-	1,680	· _	720
- 제주위탁	2	1,000	1,000	1,000	_	-	
휴양림보완							
•산림욕장	11	4,400	2,200	2,200	_	2,200	-

※ 융자조건 : 연리 5.0%, 7년 거치후 8년상환

ㅇ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생태숲

(단위: 백만원)

				사	업		1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예	산 액(일)	반)	기비니	기보다
		,	합 계	계	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15	22,108	11,324	11,324	- .	10,784	-
o 산림박·		2	8,000	4,000	4,000		4,000	_
- 설	계		-		-		-	-
- 조	성	2	8,000	4,000	4,000	_	4,000	-
- 보	완		-	_	→ [*]	-	_	_
o 지방수		11	12,050	6,175	6,175		5,875	_
- 설	계	-	, -	-	-	_	-	- 1
- 조	성	6	6,050	3,175	3,175		2,875	-
- 보	완	5	6,000	3,000	3,000	_	3,000	_
0생태	숲	2	2,058	1,149	1,149	~	909	-
- 설	계	_	_	-	-	· -	-	_
- 조	성	2	2,058	1,149	1,149	_	909	_
	완	_				-	<u>.</u>	. –

※ 산림박물관(신규): 1년설계 2년조성, 수목원: 1년설계 3년조성, 생태숲 1년설계 10년조성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 시·도, 시·군

o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생태숲 :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나. 사업담당부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ㅇ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 (042-481-4217~4219]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생태숲>

o 산림청 :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042-481-4158~9, 4163)

o 시·도 : 산림관련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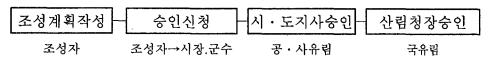
ㅇ 지방산림관리청 : 운영과(경영팀)

다. 자금지원 예정자

ㅇ 각 시ㆍ도, 시ㆍ군 및 개인휴양림 조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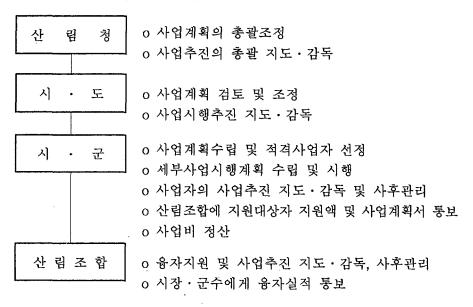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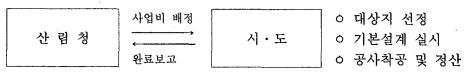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유림 자연휴양림(융자)



- ㅇ 공유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 ㅇ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생태숲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o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6. 200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신청절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신청자격 및 사업대상지 선정

ㅇ 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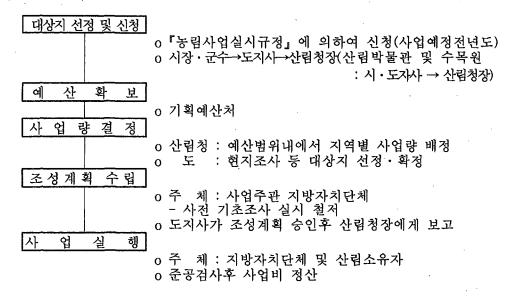
<신규조성>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으로서 배후도시의 휴양수요, 인근 산촌마을 소득향상, 기타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보완사업>

-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휴양만족도 향상, 휴양림 특색화, 운영프로그램 구축 등이 필요한 기존의 시설지 중에서 선정
- o 사유림 자연휴양림
 -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 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을 숭인 받은 자로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에 따라 선정지원
- ㅇ 산림욕장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 10ha 이상의 공유림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
- o 수목원·산림박물관
 -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토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산림박물관은 수목원내의 특수시설)
- ㅇ 생태숲 : 조성계획서 검토 선정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ㅇ 현지조사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 모지사가 선정

68 산촌종합개발(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과장 김용하, 임업서기관 최수천) 입니다.

1, 목 적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o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종합개발방식 유도
- 소득원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진홍 도모
- ㅇ 산촌의 특색을 살린 유형별 개발모델의 정립으로 산촌개발의 특성화 유도
- ㅇ 상위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 ㅇ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있는 개발

3. 근거법령

- ㅇ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 ㅇ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산림청예규 483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Ť	구 분	'92-'98까지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٨) 업 량	25	22(12)	12(17)	17(17)	60(73)
사	계	30,509	18,660	24,960	25,707	144,184
	보 조	17,656	9,700	13,014	13,387	75,304
업	융 자	7,893	5,120	6,826	7,040	39,360
	지방비	4,960	3,840	5,120	5,280	29,520
山川	자부담			-	-	-

※ ()내는 사전설계 사업물량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o 자연적·입지적 특성상 주변의 풍부한 산림(또는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경우 활력 있는 발전 가능
- o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촌 구현
- o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는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의 추진
- (2) 자금지원대상자 : 당해년도 개발대상 산촌지역의 주민(이주·정착 주민 으로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3) 지원단가 및 조건
 - o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00백만원(사업기간 3년)
 - 보 조: 1,0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융 자 : 400백만원
 - · 산촌소득원사업 : 금리 5.0%, 3년거치후 7년상환
 - · 주 택 증·개축 : 금리 4.0%, 3년거치후 7년상환
 - · 주 택 신 축 : 금리 5.0%, 5년거치후 15년상환
 - o 사전설계: 마을당 63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14억원
보조금	생활환경개선	 ○ 마을기반조성시설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 문화 복지시설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시설 등 ○ 환경정화시설 - 쓰레기 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 정비 등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 방지시설 등 	5억원
,	생산기반조성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촌산업개발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 판매, 가공・이용시설,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산로등 이에 준하는 산촌휴양시설의 설치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 등 	5억원
융 자	소득원 개발 주 택 개 량	 ○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 식물, 특용작물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흑염 소·토종닭·한봉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소득사업 ○ 주택신축 ○ 주택 증·개축 	4억원

(5) 지원기준

o 보조금사업 : 마을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생산 기반조성사업간에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o 융 자 사 업 : 지원금(4억원) 범위내에서 소득원개발과 주택개량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개별사업 지원기준은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침"에 의거 시행

나. 2001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백만원)

) A) 7).	사 업 비						
내용별	사업량 (마을)	사업비	예	예 산 액(농특)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イナモ	
계	68	25,707	20,427	13,387	7,040	5,280	_	
마을조성	51	24,640	19,360	12,320	7,040	5,280	-	
사전설계	17	1,067	1,067	1,067				

※ 융자조건 : 연리 4.0 ~ 5.0, 10~20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042) 481-4202~4204]

도 : 산림관련부서이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ㅇ 보조금 : 마을공동시설 등 지원

ㅇ 융자금 : 개발대상 산촌주민중에서 소득원사업을 희망하는 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라. 사업시행

(1)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산어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용역업체 및 대학・연구소 등 용역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에 의뢰 가능

- ㅇ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개발수요 등 주민의견 수렴
 -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명확한 개발목표와 중점투자방향 설정
 - 중장기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
 - 타부처 및 우리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 계획 검토
 - 산촌산업기반시설인 공동판매, 가공, 이용시설 또는 대규모 시설 설치시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 확정전 마을주민대표, 설계업체, 시·군 관련 과장 등이 참석하는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개발방향, 계획사업 및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또는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후 확정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확정 도지사에게 숭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숭인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군별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결과와 보완 지시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서(안)을 산림청에 제출

(2) 기본계획의 내용

- ㅇ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 ㅇ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 ㅇ 사업의 효과
- ㅇ 부분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수지 분석)
- ㅇ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이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ㅇ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등

(3)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은 도·농어촌 발전계획,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다른 부문의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수립
- 법적 제약 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투자가 과다한 대형사업 등으로 인한 과대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

- 지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다개발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연친화형 개발방식을 도입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 이용 시설 등은 유사시설의 분포상태, 수요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검토후 계획 수립
- ㅇ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 ㅇ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회관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지난 하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4) 실시설계

-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장・ 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 산촌개발마을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ㅇ 실시설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 생산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계획
 - 연도별 도입시설계획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 이미지에 맞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5) 사업시행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림조합,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
 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 기본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부처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숭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ㅇ 사업조감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종합개발사업 조감도를 마을입구 또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산촌종합개발 주요사업의 건축·공작물 등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투자비용, 사업내용, 시공자, 자금지원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안내표지판설치

(6)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계공무원을 공사 관리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여 시행

(7) 사업비 지원방법

- ㅇ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o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
- ㅇ 융자사업은 "임업정책자금(농특회계) 융자지침" 에 의거 시행

(8) 기타사항

- ㅇ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의 활성화
 - 산촌개발사업지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마을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여건 조성
 - ※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의제, 배제로 제한사항 해소 및 부담금 면제

ㅇ 예산신청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사업 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적극 협 조하여 예산신청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ㅇ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ㅇ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ㅇ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중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가 불가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2항 및 제35조, 시행령제15조)
 - ※ 기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촌종합 개발사업추진요령(산림청예규 제486호, '99.10.21)』 제34조 규정에 의함.

나. 보 고

ㅇ 사업비 정산 보고 : 당해년도 사업종결후 정산 및 보고

다. 사업의 우선지원

- 설계: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촌개발 설계관련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 자
- 조성: 산림조합 또는 산촌개발 관련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시공기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 선정(부실시공 또는 부도를 미연에 방지)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선정기준

- o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산림청예규 제486호, '99.10.21) 제6조에 의하여 산촌마을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참여도가 높은 지역
 - ※ 타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2) 우선순위

- ㅇ 뚜렷한 산림소득원(개발가능성)이 있어 임업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개발 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자연휴양림, 협업체, 영림단 조직과 연계되는 산촌마을
 - 임산물 주산단지 또는 특산임산물이 풍부하여 이용가공시설의 설치 등 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촌마을
 - 청・장년충의 수가 많은 산촌마을
- ㅇ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

(3) 사업추진 절차

대상마을 신청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신청(전년 3월말까지) ○ 시장·군수 → 도지사 → 산림청장 예산확보 O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 및 확보 대상마을 선정 O 산림청: 예산범위내에서 도별사업량(마을) 배정 ○ 도 : 현지조사후 대상지 선정·확정 기본계획수립 O 주체: 시장·군수, 사전 기초조사 실시 ○ 농산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 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 마을 개발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에 기초 ○ 산림청장이 기본계획 사전검토 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후 산림청장에게 보고 ○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설계(시장·군수) 사 업 실 행 ○ 주체 : 시장·군수 O 전문시공업체에 도급 실행

O 시장·군수는 준공검사후 사업비 정산 및 보고

V.산림자원조성

여 배

69 해외조림사업 (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과장 김형광, 행정사무관 홍창원) 입니다.

1. 목 적

-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육성
 - ㅇ 해외조림 확대로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목표
- ㅇ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ㅇ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임업 투자환경 조사

3. 근거법령

-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ㅇ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업량(ha)		26,373	5,898	12,465	9,500	83,000	
	계	25,825	8,175	13,225	12,225	52,575	
사	보 조		-		-		
업	융 자	14,624	6,371	13,225	12,225	52,575	
비	지방비	~	-		_		
	자부담	11,201	1,804	_		-	

- ※ 2002~2004년까지의 사업비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상 계획임.
- ※ 사업량은 순수조림사업 물량임.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국내 목재수요의 94%를 외재에 의존하는 해외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장기 목재공급원 확보

ㅇ 지원대상 : 해외조림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융자 신청자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농특회계 융자금

- 지원비율 : 사업비의 100% 이내

- 지워내용 : 해외조림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기존 해외조림지에 대한 육림비

- 융자기간 : 국가별, 수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아래 표 참조)

- 해외조림목 반입 : 융자금을 지원받아 식재한 조림목은 벌채시 전량 국내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 융자조건

			융자 한도	비고				
사업별 금리		구분	분 용도 계			상환	한도	1111
			칩	동남아 10년	7년	3년 .		
해외	연3%	속성수	칩	대양주, 남미13년	10년	3년	제한	
조림			용재	대양주, 남미 20년	17년	3년	없음	
		장기수	용재	28년	25년	3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량 (ha)	사 업 비							
내 용		사업비	예 산	계 산 액 (농특회계)			자부담		
		합 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7) T B		
해외조림	ha 9,500	12,225	12,225	_	12,225	_	-		

※ 사업량은 순수조림사업 물량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ㅇ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지원 결정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ㅇ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42-481-4148)
 -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액 결정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부(02-416-9421)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다. 자금지원 예정자

 해외조림 신고(허가)업체 : 한솔포렘, 이건산업, 한국남방개발, 동해필프, 세양코스모, 한화자원, 여국개발 및 신규 해외 조림 참여 예정자

라. 사업시행

- ㅇ 익년도 해외조림사업 융자지침(안) 작성: 12월
- ㅇ 해외조림 시책 설명회 : 1~2월
- ㅇ 해외조림비 융자 소요액 파악 : 2~3월
- ㅇ 업체별 융자소요액 검토 : 3~4월
- 융자실행
 업체 융자신청(산림청)→ 산림청 융자결정 통보(업체, 산림조합중앙회)→
 업체 구비서류 제출(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융자(업체)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ㅇ 매년 2~3개소 현지 지도점검 확인
- 조림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에 사업비 소요내역, 공인측량사가 조림면적을 실측한 도면 (또는 위성사진 도면) 등 정산서류를 산림청에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산림청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 공인측량사가 실측한 도면 또는 위성사진, 결산내역서, 대사관 또는 공공기관 조립실적확인서 제출
- 사업자는 융자금 인수받아 1개월이내 송금하고 사본 제출
- ㅇ 산림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ㆍ기타

ㅇ 사업추진실적 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나, 신청자격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당해년도
 조림 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다. 신청절차

ㅇ 선정권자 : 산림청장

선정절차 : 해외조림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심사 → 융자금결정
 → 민원인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계획 심사 : 조림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 등 작업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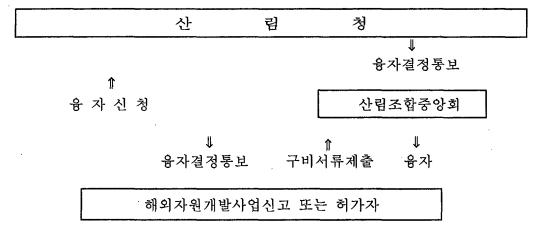
타당성 및 적정비용을 검토

라. 구비서류

- ㅇ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o 2002년도 사업계획 확인서 1부(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 ㅇ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산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마. 대상자 선정

- ㅇ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를 한 자(허가를 받았던 자 포함)로서 조림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 ㅇ 우선순위 : 없음
- ㅇ 선정절차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

,1	상호(법역	인명)														
신 청 자	성 (대표지	명 ·명)					주' 번	민등록 호			전	화				
- 1	주	소								.,	-					
	사 업	명								사업량(h	na)					
	기이스	-1]]	į	국 가						단비(\$/ha)		-				
신 청	사업소	새 <i>시</i>	7	4	역					조림수	중					
· 내 용	사 업 비		7	1		정부지			원 기		방비 자		담			
						•	11	국:	고계	보 3	조	융 자		0 1	' '	-
		비	천\$													
			첀													
농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			,			· 선	<u>l</u> 청	년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진출국주재 우리나라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붙임1 서식)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적	본 수	총조림비	사업기간	비고
	ha	본	US\$		

2. 사업비 산출내역

기보기어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고
세부사업별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신 할 내 ㅋ	. P1 J4
계				:	
(1) 예정지정리			•		장비사용시
-인건비 -장비사용료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장비사용시
-인건비					장비사용료 계상
-기 타					/11 0
(3) 조림지관리	, }				
인건비		٠,			
-기. 타					
(4) 자재대			`		
-묘 목	-				
-기 타					
(5) 기타비용					구체적으로
-측량비 등		,			명시

- * 적용환율 : US\$ = 원
- *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비용이나 특수장비사용료, 현지사정에 따른 기타 비용등은 산출내역과 구체적 소요이유를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70 산림자원조성(공공)

I. 조림·육림·묘목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과장 윤영균, 임업서기관 박종호, 임업사무관 심영만)입니다.

1. 목 적

- ㅇ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ㅇ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ㅇ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ㅇ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 ㅇ 생육단계별 육림사업의 적기시업과 숲가꾸기사업 연계 추진으로 경제림화 촉진
 - ㅇ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ㅇ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3. 근거법령

- o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 ㅇ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ㅇ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F	7.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업량(ha) (백만본)		1,425,244 (344)	153,288 (37)	154,191 (35)	56,603 (23)	837,500 (141)
		계	936,141	128,047	132,503	139,950	628,891
합계	사	보 조	350,818	58,912	59,225	70,797	321,001
-	업	융 자	86,659	10,880	10,650	6,914	51,726
	비	지방비	270,041	40,013	42,676	48,095	184,932
		자부담	228,623	18,242	19,952	14,144	71,232
	사	업량(ha)	156,480	14,588	15,491	14,903	55,500
		계	345,147	56,704	61,527	80,769	189,492
조 림	사	보 조	175,048	34,995	35,308	49,238	108,066
	업	융 자	15,104	2,081	2,071	2,071	10,350
	비	지방비	99,498	16,096	18,759	26,536	51,252
		자부담	~55,497	3,532	5,389	2,924	19,824
	사	업량(ha)	1,268,764	138,700	138,700	41,700	782,000
		계	522,433	64,466	64,466	53,898	413,437
육 림	사	보 조	175,770	23,917	23,917	21,559	212,935
	업	융 자	30,418	4,673	4,673	1,673	25,797
ļ	비	지방비	170,543	23,917	23,917	21,559	133,680
		자부담	145,702	11,959	11,959	9,107	41,025
	사업	량(백만본)	334	37	35	23	141
		계	68,561	6,877	6,510	5,283	25,962
묘목	사	보 조	-	-	-		_
생산	업	융 자	41,137	4,126	3,906	3,170	15,579
	비	지방비	_		_		
		자부담	27,424	2,751	2,604	2,113	10,383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장기조림계획에 소요되는 묘목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하여 우량용재 생산 기반조성
- o 도로변, 사적지, 관광지, 공원 등 생활권 주변 경관조림으로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 추진으로 국토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대상자

ㅇ 보조사업 : 조림, 육림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산람경영자 •

○ 융자사업 : 조림, 육림사업 및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청자 (산주,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3) 지원비율

ㅇ조 림

- 정부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경관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유실수(밤나무)조림 : 묘목대 100% (국비 50%, 지방비 50%)

· 고성산불피해복구조림 : 100%(국비 90, 지방비 10%)

· 동해안산불 피해복구조림

- 송이복원조림 : 100%(국비 90%, 지방비 10%) 경관조림 : 100%(국비 70%, 지방비 30%)

- 융 자

· 자력사업 : 소요 사업비의 100%까지 융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융자

ㅇ육 림

- 정부보조 : 사업비의 8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융 자

· 자력사업 : 소요사업비의 100%까지 융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융자

ㅇ 묘목생산: 묘목생산비의 60%(융자) - 융자한도 100백만원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Γ					시	· 업	비			
	내용별 사업량		사업량	합 계	예산액(보조	:일반·농특	, 융자:기금)	જીવી પો	-1 H -1	
				합 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7	4)	56,603ha 23백만본	139,950	77,711	70,797	6,914	48,095	14,144	
	조	림	14,903ha	80,769	51,309	49,238	2,071	26,536	2,924	
	육	림	41,700ha	53,898	23,232	21,559	1,673	21,559	9,107	
	묘목	·생산	23백 만본	5,283	3,170		3,170		2,113	

** 융자조건 : 경제수 조림 및 육림 연리 3%, 20년거치후 15년 상환
 기타 조림 및 육림 연리 3%, 10년거치후 5년 상환
 묘목생산 연리 5%, 3년거치후 2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o 조림·육림: 시·군

o 묘목 생 산 : 시·도(산림조합 : 융자금 취급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o 산 림 청: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042-481-4154~7)

o 시 · 도 : 산림관련부서

o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조림>

- ㅇ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밤나무 노령목 갱신대상지, 벌채적지 재조림예정지, 형질이 불량한 임지 등 위주로 선정
 - 맹아·치수발생 등으로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인공조림 대상지에서 제외
- ㅇ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림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과 산벚나무, 단풍나무 등 경관수종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ㆍ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백두대간등 주요지역은 모두베기를 하지 않고 줄베기나 하충불량목만 제거후 수하식재
- ㅇ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 위주로 선정
- ㅇ조 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맹아갱신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갱신)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 ·경제수: 2,000~5,000본/ha
 - · 맹아갱신 : 인공식재조림을 하지 않고 활엽수벌채임지 그루터기, 잔존목 등을 정리 맹아발생이 잘되도록 함.
 - · 경관림조림 : 300본~2,000본/ha
 - ·유실수조림: 400~600본 (수종별 식재기준본수에 의거 식재)
- ㅇ 묘목 수급 : 조림설계에 따라 수급
- ㅇ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 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경관림 조성사업은 여론을 수렴 설계에 의거 추진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 실행)

<육 립>

- 풀베기 : 조림후 3~5년간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용기묘·파종조림지 등은 년 3회 실행 가능
- 어린나무가꾸기: 조림목의 수관이 맞닿아 임분이 형성된(수고 3~6m)
 임지에 6~9월 사이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 등을 제거
- 덩굴제거: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9월 사이에 약제 주입 등으로 제거하되 약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인력제거(인력수급 등을 감안 년중 실시)

ㅇ 천연림 보육

- 예정지 선정이 용이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미래목에 대한 가지 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어린나무보육대상지 :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천연임분
- 유령림보육대상지 : 평균수고 4~12m정도로서 상충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고 울폐되어 수관경쟁이 심한 임분
- 간 벌 : 입목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밀생임분으로서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

<묘목생산>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등록을 한 종묘판매업자중 정부 조림계획 조림용으로 필요한 묘목을 도지사로부터 생산 지정받은 수량에 대한 책임생산
- 황칠나무, 옻나무, 고로쇠나무, 목백합나무 등 소득유망수종 양묘 확대

라.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추진

- 산주가 자체적으로 조림·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림·육림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대행 위탁하므로써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 대행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산림법 제14조 및 제5조

마. 사업비 지원방법

<조림 및 육림>

ㅇ 보조사업

보조결정 시장・군수 → 사업실행 산주 → 현지확인 시장・군수

→ 보조금지급 시장・군수

ㅇ 융자사업

용자신청 산주 → 확인·심사 및 융자결정 시·군

- → 결정자 통지 신청자, 산림조합 → 융자금 지급 산림조합
- → 사업실행 산주

<묘목생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주 체
 - o 조림 및 육림: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묘목생산 : 묘목생산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2) 사후관리 방법
 - ㅇ 조림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상황을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
 - ㅇ 현지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ㅇ 양묘 포지 육묘관리와 양묘시업상황, 생산실태조사(년2회) 실시

나, 보고 기타

<조림 및 육림>

- ㅇ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o 조림·활착상황 보고: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o 보조사업 실적 보고: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묘목생산>

o 양묘시업 실태점검 조사결과 : 매년 5월말, 10월말까지 (일반통계승인번호 13609)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시·군 산림관련 부서
- o 융자사업: 시·군 산림조합

<묘목생산>

o 융자사업:시·군

나. 신청자격

<조림 및 육림>

- ㅇ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ㅇ 융자사업
 - 영림계획상 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자력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묘목생산>

o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다. 신청절차

<조림 및 육림>

- ㅇ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ㅇ 융자사업 : 사업 희망자가 시·군 산림조합장에게 신청

<묘목생산>

o 융자사업: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시·군 경유 시·도지사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ㅇ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ㅇ 융자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신청서(별지 2호 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림>

- ① 미입목지
- ② 산불・병해충등 피해임지
- ③ 수확벌채지
- ④ 복충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 ⑤ 불량한 수종갱신 대상지
-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재상사업별로 지방비 확보를 감안한 사업량이 요구되도록 조치
 ·독림가, 임업후계자, 협업체 경영산림 우선 선정

<육 림>

- ①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② 육림사업을 동의한 산림소유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협업체 경영산림 우선 선정

<국고보조 제외임지>

- ① 국유림
-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 ③ 준보전임지중 타용도로 전용 할 임지

<묘목생산>

- ① 정부지정묘목 생산자중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
- ②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육림사업(보조사업)

2. 현 황

	위	치	ਹੈ.	면.	리.	번지
사업예정지	소유	자명				
현 황	면	적	필지		ha (m²)	
	영림 편성	계획 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H	세부	계획	m 11)		사 '	겁 비	(천원)	
구 분	사업명	면적	단비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ha)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신청서

세보시어며	디나이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いしていまる	단케	~~EB3	계	용자	자담	보조	가급도세시	
		,						
							·	
		' !					. *	
					ه ا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세무사업명 [단위] 사업량	세무사업명 [단위] 사업량	세무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융자 자담	세무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용자 자담 보조	

2001.

ㅇ 신 청 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ㅇ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다. 기타 필요한 서류

○ ○ 산림조합장 귀하

Ⅱ. 산림생태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염상철, 행정사무관 이중락) 입니다.

1. 목 적

- ㅇ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을 보존
- o 보호수의 보존 등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설치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노목・거목・희귀목 및 전통 숲으로서 보호수로 지정된 명목(名木)・보목 (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 및 풍치목(風致木)을 대상으로 보존을 위한 외과수술 추진
- o 보호수의 안내 표지판, 보호책 및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경관보존 등을 위한 필요시설을 정비 또는 신규설치

3. 근거법령

ㅇ 산림법 제67조,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	사 업 량	290	290 50 77 200		200	800
- 외과수술(본)		290	50	77	100	400
- 주	변정비(개소)	_	_	_	100	400
사	계	435	75	116	800	3,200
업	- 국고보조	218	38	58	240	960
出	- 지방비	217	37	58	560	2,240

※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의 가액은 제외됨.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고사(故事)나 전설이 전래되어 오거나 마을수호 등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회귀^{*}목(稀貴木) 및 전통 숲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여 겨레의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 줌.

(2)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3) 지원조건

외과수술: 본당 4,000천원, 국고보조 30%, 지방비 70%

ㅇ 주변정비: 개소당 4,000천원, 국고보조 30%, 지방비 70%

(4) 사업내용

- (가) 외과수술: 수간이 부패되거나 구멍 등이 생겨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는 증상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실시 하되, 보호수 생육에 필요한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실시가능
 - 부패부제거, 살균처리, 살충처리, 방부처리, 방수처리, 인공수피, 수지처리, 고사지·쇠약지 제거, 쇠조임(브레싱), 상토처리 등
- (나) 주변정비: 보호수와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을 지역정서 및 주위환경과 조화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속의 보호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ㅇ 보호수의 안내판, 보호책, 정자(亭子), 평상(平床)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백만원)

·			사	업		비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예신	액(일반호	회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계	보조	융 자	71071	711 1
계	200	백만원 800	240	240	-	560	. -
보호수 외과수술	100본	400	120	120		280	_
보호수 주변정비	100개소	400	120	120	_	28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

o 시·도지사: 사업지도·감독

o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정산보고

나. 사업담당부서

o 산림청 :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042-481-4082~4)

o 시·도: 산림관련부서

o 시·군·구: 산림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사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 사업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시・도관내 타 시・군・구에서 확보한다.
-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이 동일개소(보호수지정번호 기준)에서 시행되는 경우 개소당 사업비를 8,000천원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시행할 수있다. 단, 세부사업별(외과수술, 주변정비) 사업비의 1/2 (2,000천원) 초과 불가
 - 예) 외과수술 6,000천원/본, 주변정비 2,000천원/개소 사업시행 가능
 - 상기 동일개소가 아닌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비 기준으로 시행

○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시공자의 자격은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과거 외과수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 사업주관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지도・ 감독자인 시·도지사에게 사업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비의 집행 및 사업실적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은 세부사업별(합계, 외과수술, 주변정비)로 재원을 명백히 구분 하여 실시한다.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한다.

라. 기타사항

본 지침의 내용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담당부서(산림보호과)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외과수술을 실시한 보호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수관리자로 하여금 성실히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보호수관리대장에 사업내역을 기록관리하고, 보호수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정(또는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o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नी हो पने	사후	관리 기간	워버케팅 기조	11	
재산명	부터	까지	처분제한 기준	비고	
건물(정자 등) 및 보호책	준공일	o 보호수해제일 까지 o 최하 7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보호수 해제시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축 등 조치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와 함께 사업실적보고서(총공통-9)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익년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산림보호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수관리자는 생육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외과수술 또는 주변정비가 필요할 경우 사업 신청
- ㅇ 사업비는 2001년도 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적용
 - 보호수 외과수술사업과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나. 사업대상자 선정

- o 시·도별 사업물량(예산) 배분
 - 당해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보호수 지정본수, 사업의욕, 지난해 사업실적, 사업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분

- 시·군·구별 사업물량(예산) 배분
 - 보호수 지정·관리상태가 양호한 자치단체(관리부실 민원발생 등 참조)
 - 과거 사업수행이 우수한 자치단체(수술결과, 생육생태 등 참조)를 우선적으로 지원

다. 기타 사항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목적외에 지원자금을 사용할 경우 즉시 회수후 산림청에 보고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½이하 사용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일반재배



농약 · 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mark>안전성을</mark>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